

고용분야 조세 지원제도의 세무행정상 쟁점과 개선방향

2024. 12.

김문정 · 정효림 · 박하얀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문정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효림 세정연구팀 특수전문직3급

박하얀 세정연구팀 선임연구원

목 차

| | |
|--|----|
| I. 서론 | 1 |
| II. 고용분야 세액공제 및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검토 | 4 |
| 1. 개요 | 4 |
| 2.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 개관 | 6 |
| 3.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 상세: 세액공제 신청 및 납세협력비용의 검토 | 13 |
|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 13 |
| 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7 |
| 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9 |
| 라.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24 |
| 마. 소결 | 28 |
| III. 고용분야 세액공제와 유사한 해외사례 검토 | 31 |
| 1. 미국 | 31 |
| 가. 근로기회 세액공제(WOTC, Work Opportunity Tax Credit) | 31 |
| 2. 캐나다 | 37 |
| 가. 연방정부: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 37 |
| 나. 주정부 | 42 |
| 3. 일본 | 50 |
| 가. 임금 인상 촉진세제의 유형별 적용 대상 및 공제율 | 50 |
| 나. 공통 적용 사항 | 54 |

| | |
|-----------------------------------|----|
| 다. 유형별 임금 인상 촉진세제 비교 | 60 |
| 4. 소결 | 61 |
| IV. 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 64 |
| 1. 연구 개관 | 64 |
| 2. 설문조사 기초통계량 | 65 |
| 3. 설문조사 자료 분석 | 69 |
| V. 결론 | 81 |
| 참고문헌 | 85 |
| 부 록 | 87 |

표 목차

| | |
|---|----|
| 〈표 II-1〉 「조세제한특례제한법」상 분류별 조세지출액 추이(2016~2025) | 5 |
| 〈표 II-2〉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제도 연혁 | 7 |
| 〈표 II-3〉 법인세(중소기업) 고용분야 세액공제 국세 통계 | 8 |
| 〈표 II-4〉 법인세 계산 절차 | 10 |
| 〈표 II-5〉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절차 | 11 |
| 〈표 II-6〉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 12 |
| 〈표 II-7〉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15 |
| 〈표 II-8〉 고용분야 세액공제 비교표 | 29 |
| | |
| 〈표 III-1〉 캐나다 매니토바 주의 근로경험 세액공제 종류 | 43 |
| 〈표 III-2〉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훈련 세액공제 상세 | 47 |
| 〈표 III-3〉 임금 인상 촉진세제 유형별 공제율 등 | 60 |
| 〈표 III-4〉 미국, 캐나다, 일본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세무행정 사항 비교 | 63 |
| | |
| 〈표 IV-1〉 표본에 대한 가중치 | 66 |
| 〈표 IV-2〉 설문조사 기초통계량1 | 67 |
| 〈표 IV-3〉 설문조사 기초통계량2 | 68 |
| 〈표 IV-4〉 납세협력비용1(근로소득공제 관련) | 71 |
| 〈표 IV-5〉 납세협력비용2(경력단절/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 71 |
| 〈표 IV-6〉 납세협력비용1과 납세협력비용2 간의 상관성 | 73 |
| 〈표 IV-7〉 납세협력비용 합산수치 통계량 | 74 |

그림 목차

| | |
|---|----|
| [그림 II-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양식 | 16 |
| [그림 II-2]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양식 | 18 |
| [그림 II-3]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양식 | 22 |
| [그림 II-4]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양식 | 23 |
| [그림 II-5]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양식 | 27 |
| | |
| [그림 III-1] 미국 일반 사업 세액공제 신청 양식 중 근로기회 세액공제 작성란 (From 3800) | 35 |
| [그림 III-2] 미국 근로기회 세액공제 명세서 양식(Form 5884) | 36 |
| [그림 III-3] 캐나다 법인 투자세액공제 양식(T2SCH31) 내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작성 항목 | 40 |
| [그림 III-4] 캐나다 매니토바 주 Schedule 384 중 청소년 근로경험 인센티브 작성 항목 | 44 |
| [그림 III-5] 캐나다 Schedule 5 내 매니토바 주 근로경험 세액공제액 작성 항목 | 46 |
| [그림 III-6]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Schedule 428 중 프로그램 완료 세액공제 작성 항목 | 48 |
| [그림 III-7] 캐나다 Schedule 5 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훈련 세액공제액 작성 항목 ... | 49 |
| [그림 III-8] 일본 여성 참여 촉진 기업 관련 '에루보시' 인증 마크 | 56 |
| [그림 III-9] 일본 육아 양립 지원 기업 관련 '쿠루민' 인증 마크 | 57 |
| [그림 III-10] 일본의 급여 등의 지급액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액 특별공제에 관한 명세서 | 58 |

| | |
|---|----|
| [그림 IV-1] 납세협력비용 지표의 확률분포 | 72 |
| [그림 IV-2] 기업의 소재지별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 비교 | 75 |
| [그림 IV-3] 기업의 특성별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 비교 | 76 |
| [그림 IV-4] 전국 세무사 지도 | 78 |
| [그림 IV-5] 납세협력비용 수준과 세액공제 효과에 대한 주관적 예상 | 80 |

I. 서론

- 저출산 고령화, 소득양극화,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정부의 공적지원은 가장 대표적인 기제였으며, 최근에도 그 공적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원방식은 규제, 재정지출, 조세지출, 금융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조세지출 집행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2025년 조세지출예산의 규모는 78.0조원(명목 GDP 대비 2.95%)로 2024년 71.4조원 대비 6.6조원(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회예산정책처(2024)에서는 이러한 조세지출 증가가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에서 고용분야 조세지출은 그 규모 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귀속연도 기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에 고용(노동시장)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고용창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근로소득 증대, 청년고용 증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등과 관련됨
 - 이 중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단독으로 중소기업(1.4조원)과 일반법인(0.4조원)의 조세지출이 집행되었음
- 고용분야의 조세지출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집행된다면 의미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조세지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업규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 등 노동공급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일 수 있으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 차원에서 여성의 고용률을 증진하고,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단절될 가능성을 낮추려는 정책은, 육아휴직 급여 등과 같은 (의무)재정지출 외에도 조세지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고용분야 조세지출의 경우 일자리의 특성, 근속기간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의 경우 결혼, 육아 등의 근로자의 사적 정보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음
 - 세액공제라는 공식적인 조세제도에 대하여, (비록 그 제도가 납세가 아니라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수혜기업이 그 제도에서 요구하는 각종 행정자료를 적절한 양식으로 정확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정부담이 광의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한 범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동시에 고용분야와 같이 전통적인 과세당국의 집행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세액공제를 집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지출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집행부서의 행정부담 역시 클 수 있음
 - 세액공제가 복잡하게 설계되었을 때, 신청자가 해당 요건을 만족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과세당국이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잠재적 수급자가 빈번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 담당자는 상시적으로 조세지출 업무에 자원을 투입해야 함
- 결국 조세지출의 증가는, 과세당국의 집행부서 및 잠재적 수급자 양측에서 모두 상당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비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음
- 본 연구에서는 고용분야 조세지출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지출의 행정비용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II장에서는 고용분야 세액공제 및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검토함
 -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의 검토: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신청과정) 고용 세액공제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 신청자가 경정청구 시 제출하여야 할 기본 제출필요서류나 추가 제출서류를 검토
 - (사후관리의무) 고용분야 세액공제의 경우 초기에 명시된 조건 유지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함
- 제III장에서는 고용분야 세액공제와 유사한 해외사례를 검토함
 - 미국: 근로기회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 캐나다: 연방정부의 견습일자리창출 세액공제(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주정부의 근로경험 세액공제(paid work experience tax credit)
 - 일본: 전 기업 대상 임금인상 촉진세제, 중견기업 대상 임금인상 촉진세제, 중소기업 대상 임금인상 촉진세제
- 제IV장에서는 고용분야 세액공제의 납세협력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제V장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 함의점을 제시함

II. 고용분야 세액공제 및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검토

1. 개요

-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조세 지원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지원은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임
 - 여기에는 ① 고용촉진장려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의 채용 지원금과 ② 고용유지, 육아휴직 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금, ③내일배움카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조세지출을 통한 고용지원은 고용 촉진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세금 공제 및 세액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임
 -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장에서 제6장에 걸쳐 비과세 및 감면 등에 대한 개별 조세특례제도들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고용 촉진과 관련한 내용은 제4장 직접국세의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나열함

- 조세지출을 통한 고용지원과 관련한 지출액은 지난 10년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의미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도의 효율적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에 따르면, 고용지원 분야의 지난 10년간 조세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34.8%로, -3.4~15.3%의 증가율을 보여준 다른 분야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1〉 「조세제한특례제한법」상 분류별 조세지출액 추이(2016~2025)

(단위: 조원, %)

| | 2016 |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연평균 증감률 |
|------------------|----------------|-----|----------------|----------------|----------------|----------------|----------------|----------------|------------|
| 국민생활안정 | 11.9 (31.0) | ... | 16.8 (31.7) | 17.8 (31.3) | 19.5 (30.7) | 21.8 (31.3) | 23.1 (32.3) | 25.1 (32.2) | 8.7 |
| 간접국세 | 9.0 (24.0) | ... | 11.9 (22.5) | 11.6 (20.3) | 12.3 (19.4) | 13.3 (19.0) | 14.1 (19.7) | 14.6 (18.7) | 5.5 |
| 근로·자녀장려 | 1.6 (4.3) | ... | 5.1 (9.7) | 5.2 (9.1) | 5.0 (7.9) | 5.2 (7.5) | 5.8 (8.1) | 5.8 (7.5) | 15.3 |
| 투자촉진 | 1.6 (4.4) | ... | 0.7 (1.4) | 1.4 (2.5) | 2.3 (3.6) | 2.2 (3.1) | 1.8 (2.5) | 4.4 (5.6) | 11.5 |
| 연구개발 | 2.5 (6.7) | ... | 3.0 (5.8) | 3.0 (5.3) | 4.1 (6.5) | 5.1 (7.3) | 3.6 (5.0) | 3.7 (4.8) | 4.6 |
| 고용지원 | 0.4 (1.0) | ... | 2.4 (4.6) | 3.1 (5.4) | 4.0 (6.2) | 4.6 (6.6) | 5.0 (7.0) | 5.3 (6.8) | 34.8 |
| 중소기업 | 2.2 (6.0) | ... | 2.7 (5.0) | 2.7 (4.7) | 3.4 (5.3) | 3.8 (5.4) | 3.6 (5.0) | 3.8 (4.8) | 6.0 |
| 기타직접국세 | 1.4 (3.7) | ... | 1.9 (3.6) | 2.5 (4.5) | 3.5 (5.5) | 3.7 (5.3) | 3.8 (5.4) | 3.8 (4.8) | 11.8 |
| 저축지원 | 1.5 (4.0) | ... | 1.7 (3.2) | 1.7 (3.1) | 2.0 (3.1) | 2.6 (3.7) | 3.5 (4.8) | 3.8 (4.9) | 10.8 |
| 지역균형발전 | 2.0 (5.4) | ... | 2.6 (4.9) | 2.9 (5.0) | 2.4 (3.8) | 1.6 (2.3) | 1.3 (1.9) | 1.5 (1.9) | △3.4 |
| 기타 ¹⁾ | 3.3 (8.9) | ... | 4.0 (7.6) | 5.0 (8.9) | 5.1 (7.9) | 6.0 (8.5) | 5.9 (8.3) | 6.3 (8.0) | 5.5 |
| 전체 | 37.4 (100) | ... | 52.9 (100) | 57.0 (100) | 63.5 (100) | 69.8 (100) | 71.4 (100) | 78.0 (100) | 8.5 |

주: 1) 기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 항목, 공익사업지원, 기업구조조정, 외국인 투자 등 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의 합계

1. 괄호 안은 각 연도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24, p. 11 재인용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용지원 세액공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분류된 10개 조항과 관련한 세액공제의 절차 및 내용과 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해당 조항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경력단절 여성 의 재고용,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근로소득의 증대, 청년고용의 증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등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납세협력비용이란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부세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금전, 시간, 심리적 비용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음¹⁾
- 금전적 비용에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등이 포함됨
- 시간 비용에는 세무 업무를 위해 채용한 직원 혹은 세무대리인, 그리고 사업자의 내부 직원 및 비사업자 본인의 시간 투입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등이 있음
- 납세자가 납세협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 또한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심리적 비용의 경우 관찰 및 계량화가 어려워 실제 측정에서는 납세협력 비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2.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 개관

- 고용분야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내 제4장 4절2에 분류된 세액공제 유형 중 하나로, 지속해서 변화하는 고용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력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고용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정되며 조세지출을 이어옴
-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나 경제·산업 환경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년 개정되며²⁾ 이 중 고용분야 세액공제는 지속해서 변화하는 고용시장에서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되며, 기업의 인력 고용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1) 김성태·윤성용,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40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22. 12, pp. 125~143.

2)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여러 조세특례(감면·공제 등)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일몰 또는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한 조항은 연장되지 않고 폐지되며, 여전히 필요성이 큰 특례는 보완·연장됨.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와 같은 ‘일몰제도’가 적용되며 매년 새로운 정책 목표에 맞는 특례를 설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짐

II. 고용분야 세액공제 및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검토 7

- 고용분야 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존 특례 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18년도 적용으로 도입되었음
- 이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 요건이 추가되는 등 매년 개정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의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함(〈표 II-2〉 참조)

〈표 II-2〉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제도 연혁

| 연도 | 내용 ¹⁾ |
|-------|---|
| 2018년 | • 「고용증대세액공제」(2017. 12. 19. 신설) -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 |
| 2019년 | •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공제금액 및 중소기업 추가공제 적용 연도 확대 |
| 2020년 | •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로 공제금액 적용 |
| 2021년 | • 청년 등에 60세 이상 근로자 추가 • 한시적 2020년도 추징 유예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해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그 해는 사후관리를 유예하고, 추가공제 및 추징 여부는 2020년을 건너뛰고 2021년부터 판단하도록 규정함(조특법 §29조의7 ⑤~⑦) |
| 2022년 | • 2021~2022년 고용증가분에 수도권 외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청년 등 공제 금액 한시 확대 적용 |
| 2023년 | • (통합개정) 아래의 기존 법령을 통합하여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22.12.31) ²⁾ -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³⁾ - 정규직전환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 ⁴⁾ -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 ⁵⁾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 3항2호) |
| 2024년 | • 「통합고용세액공제」개정안 발표(부결) - 고용 증가 인원 지원액 상향, 인건비 지출 증가분 정률 지원, 임시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 지원대상 확대 |

주: 1)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상 일몰 규정이나 기한을 연장하거나 해당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년 개정안에 따라 공제금액 및 사후 관리 등이 상이함

2) 2023년 및 2024년 과세 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과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고용유지) 신설(2021. 12. 28)

4) 정규직전환세액공제(2014년도 말 신설, 2022년도 말 일몰됨)

5)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자료: 국세청, 「알기 쉬운 고용증대 세액공제」, 2023, p. 86.

- **(취지 및 특징)**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의 청년,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근로자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고용분야 세액공제는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 확대가 고용 수요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체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³⁾
 - 또한, 일반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 및 재고용을 지원함
 - 대표적인 고용분야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세액공제⁴⁾」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고용분야 세액공제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확대됨

〈표 II-3〉 법인세(중소기업) 고용분야 세액공제 국세 통계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 신고 법인수 | 금액 | 신고 법인수 | 금액 | 신고 법인수 | 금액 | 신고 법인수 | 금액 | 신고 법인 수 | 금액 | 신고 법인 수 | 금액 | |
| 통합 고용 세액 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 4 | 147 | 17,631 | 378,443 | 26,459 | 621,225 | 38,537 | 900,223 | 51,342 | 1,195,018 | 65,492 | 1,402,684 |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5,892 | 65,804 | 15,990 | 120,951 | 23,795 | 193,551 | 30,152 | 227,505 | 41,008 | 315,142 | 51,198 | 385,583 |
| |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 262 | 8,033 | 331 | 13,892 | 357 | 11,969 | 330 | 13,094 | 350 | 11,690 | 315 | 10,222 |
| |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 7 | 16 | 21 | 132 | 22 | 133 | 43 | 274 | 75 | 591 | 102 | 777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108 | 358 | 175 | 645 | 250 | 2,344 | 277 | 2,711 |
| | 합계 | 6,165 | 74,000 | 33,973 | 513,418 | 50,741 | 827,236 | 69,237 | 1,141,741 | 93,025 | 1,524,785 | 117,384 | 1,801,977 |

3) 윤성만·박진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 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p. 162.

4)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다섯가지 세액공제로 개별 운영되던 고용분야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일부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운영함

〈표 II-3〉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신고 법인수 | 금액 | 신고 법인수 | 금액 | 신고 법인수 | 금액 | 신고 법인수 | 금액 | 신고 법인 수 | 금액 | 신고 법인 수 | 금액 |
|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등 졸업자 복지 중소기업세액공제 | 4 | 28 | 8 | 54 | 7 | 114 | 9 | 234 | 8 | 90 | 8 | 150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12 | 2,340 | 285 | 4,632 | 328 | 4,757 | 354 | 3,815 | 445 | 5,286 | 1,131 | 10,259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20 | 103 | 16 | 77 | 30 | 109 | 42 | 220 |

자료: TASIC,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2021년~2023년,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H01202439781>, 검색일자: 2024. 9. 30.

- (세액공제 절차) 법인세 세액은 〈표 II-4〉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고용분야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들과 마찬가지로 총부담세액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짐
 - 우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 시에는 발생주의가 원칙인 회계와 달리 세법은 확정주의를 따르므로, 회계상 소득금액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이루어짐
 - 두 번째로는, 세무조정이 완료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과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내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 세 번째로,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 네 번째로, 앞선 단계에서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과 같은 세액공제내용을 반영하고, 여기에 가산세나 요건이 미비한 기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더하여 총부담세액을 결정함⁵⁾

5) 해당 단계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최저한세'를 고려하여야 함. 이는 직접비용을 수반하는 재정지출과의 차이 중 하나로, 세 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재정 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조세지출 내 장치임

- 이때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세액이 0원이거나 세액공제 적용액보다 낮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원래보다 낮은 수준만큼만 적용받게 됨
- 결정된 세액에 과세연도 중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함

〈표 II-4〉 법인세 계산 절차

| 단계 | 산출식 |
|---------------|---|
|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세무조정)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 ② 과세표준 | ① -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
| ③ 산출세액 | ②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9%, 19%, 21%, 24%) |
| ④ 총부담세액 | ③ - 공제, 감면세액(세액공제) + 가산세 + 공제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
| ⑤ 차감납부할 세액 | ④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

자료: 저자 작성

- **(제출 서류 - 정기신고)** 기한 내 정기신고 시 관련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세액공제별 세액공제신청서 또는 계산서를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⁶⁾
- 정기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신청 시 세액공제별 신청서와 함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신청 대상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이 있음⁷⁾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사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기록 사항 관련 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및 확인서 등으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함⁸⁾

6) 「조세특례제한법」 제4절2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8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3

- (제출 서류 - 경정청구) 신고 이후 경정청구 신청 시에는 세액공제와 관련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정기신고 이후 ‘경정청구’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필요한 기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 검토 과정에서 급여 관련 자료, 4대 보험 서류, 균경력 및 장애인증명서 등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표 II-6〉 참조)⁹⁾
 - 이처럼 세액공제 신청과 관련된 행정비용은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며, 과세관청 또한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고용분야 세액공제의 신청 및 검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됨

〈표 II-5〉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절차

| 순서 | 내용 |
|------------------|---|
| 1. 법인세, 소득세 신고 | • 법정 신고기한 내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 2.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 • 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과세연도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관련 서식(경정청구서 등), 경정청구 사유 증명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내역 등) |
| 3. 세무서 검토 및 처리 | • 제출된 경정청구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 및 전산 등록되며 검토 및 처리를 진행 • 해당 절차에서 검토 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 4. 환급 결정 및 지급 | • 경정청구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정, 경정하여 과다 납부액 지급(환급) 또는 청구 결정, 경정 사유 없음을 통지 |
| 5. 사후관리(고용유지) | • 세액공제 받은 후 일정 기간(신청 기간 이후 2년) 고용 인원 유지 • 고용 인원 유지 등 기준 미충족 시 재계산 납부(추징) ¹⁾ |

주: 1) 경정청구 이후 고용 유지 의무 기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계산하여 초과 환급분에 대하여 납부할 시 초과 환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9)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총괄표 및 상시근로자 현황’, <https://www.nts.go.kr/nts/na/ntt/sele ctNttInfo.do?mi=2386&nttSn=1334853>, 검색일자: 2024. 8. 13.

〈표 II-6〉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 | 제출 서류명 |
|----------------------|--|
| 기본 제출 필요 서류 | 1. 근로계약서(지급명세서상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 경우 제출)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없는 경우 제출) 3.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중 택일(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있는 경우 제출) 4.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환급금 양도요구서 동시 제출 또는 기장(신고)세무대리인과 경정청구 대리인이 다른 경우) |
| 추가 제출 요청 서류 | 1. 급여대장(급여 송금 내역, 급여 지출결의서, 급여 차이 내역 등) 2.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3.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산재 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중 택일) 4. 군 경력증명서(국방부), 병적증명서(병무청) 5. 장애인증명서 6. 연도별 임원명세서 7. 기타 상시근로자 확인을 위한 서류 |

자료: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총괄표 및 상시근로자 현황',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386&nttSn=1334853>, 검색일자: 2024. 8. 13.

- **(사후관리상 납세협력비용)** 고용분야 세액공제의 경우 고용 유지 및 증대 등 세액공제 조건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됨
- 고용분야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고용 유지 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환수, 고용인원 변동 시 공제세액 추징 등의 비용이 발생함
 -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고용인원 증가로 계산하는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도 후 근로자가 감소한 연도에는 세액공제액을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어 납부하여야 함¹⁰⁾
 - 납세자들은 세액공제 신청 후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특히,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증대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액공제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 고용인원 유지 등의 사후관리가 중요함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또한, 채용 시점 공제 여부가 불투명하여 세금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치는 경우 고용 유인 기능이 부족하고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액 추정 및 계산이 틀리면 가산세 등으로 세 부담이 증가함¹¹⁾
 - 고용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정기신고 시 공제를 바로 신청하지 아니하고 고용의 유지를 확인한 후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¹²⁾ 부당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기획성 경정청구 또한 늘어남¹³⁾

3.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 상세: 세액공제 신청 및 납세협력비용의 검토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건에 맞는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계산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는 세액공제임¹⁴⁾
 -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증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세액공제 계산서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현황 및 증가 인원을 신청자가 조건에 맞는 수를 적어 제출하여야 함
 - 세액공제 신청 대상이 되는 1차, 2차, 3차 연도에 걸쳐서 세액공제분을 계산하여 '상시근로자 수' 및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기재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11) 조세일보,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고용창출 유도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22096#_enliple, 검색일자: 2024. 8. 12.
12) Tax Watch, 「내 돈 돌려줘... 불복, 경정청구 환급금이 늘어난 이유」, 2024.11.,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4/10/28/0004/naver>, 검색일자: 2025. 1. 13.
13)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2024.11.,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37954>, 검색일자: 2025. 1. 13.
1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 특수관계인, 보험료 납부 등으로 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지 등 아래의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음¹⁵⁾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르는 부담금 또는 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해당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일반 상시근로자 외 청년 정규직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상시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자를 의미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같은 법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계산서 작성 시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의 합계를 한도로 감소한 인원에 세액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¹⁶⁾
- 최초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종료일까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을 때 세액공제액을 추가로 받지 못함
- 고용 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에 따라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로 공제받았던 일부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

1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8

〈표 II-7〉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

| 구분 | 중소기업(3년간) | | 중견기업(3년간) | 일반기업(2년간) |
|-----------------------|-----------|-------|-----------|-----------|
|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
| 청년 등 외 | 850 | 950 | 450 | - |
| 청년 등 ¹⁾ | 1,450 | 1,550 | 800 | 400 |
| 정규직 전환 또는 육아휴직 복직자 | 1,300 | | 900 | - |

주: 1) 청년 등이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상시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그림 II-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양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개정 2024. 3. 22.>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 | | |
|-------|---------------------------|-----------|
| ①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
| ② 과세연도 | 년 월 | 일부터 | 년 월 | 일까지 |
|--------|-----|-----|-----|-----|

③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직전전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 |
|-------------------------|----------|---------|---------|
| ⑥ 상시근로자 수 (⑦+⑧) | | | |
|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 | |
|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 | | |
|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 | | |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 | | |

④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⑩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
|-------------------|-------------------|--------------------------|
|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⑫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⑪-⑫) |
| | | |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
|----------------------|----------------------|-----------------------------|
| ⑭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⑮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⑯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⑭-⑮) |
| | | |

3.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
|---------------------------------|---------------------------------|--|
| ⑰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 ⑱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 ⑲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⑰-⑱) |
| | |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내 별지 제10호의 9서식 3페이지 중 일부(2024년 기준)

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¹⁷⁾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자여야 함
- 해당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에만 해당함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동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함)
-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연도의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의 경우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30%, 중견기업의 경우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함

1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 이때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내 ‘별지 제10호서식’을 통해 규정한 바 있으며, 제출 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이 요구됨¹⁸⁾

[그림 II-2]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양식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제 1 쪽) | | | | | | |
| 1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③ 대표자 성명 | | ④ 생년월일 |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2 과세연도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3 세액공제 계산내용 | | | | | | |
|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 | | | | | |
| ⑥ 성명(생년.월.일) | ⑦ 졸업학교명 | ⑧ 졸업일자 | ⑨ 기업 고용(입사)일자 | ⑩ 졸업후 2년 이내 고용 여·부 | | |
| A (. . .) | | | | 여, 부 | | |
| B (. . .) | | | | 여, 부 | | |
| C (. . .) | | | | 여, 부 | | |
| D (. . .) | | | | 여, 부 | | |
| E (. . .) | | | | 여, 부 | | |
| 나. 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복직 여부 | | | | | | |
| ⑪ 입대일자 | ⑫ 전역 등 일자 | ⑬ 복직일자 | ⑭ 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복직여부 | ⑮ 인건비 지 금액 | ⑯ 공제율 | ⑰ 세액공제 금액 (⑬×⑯) |
| A | | | 여, 부 | | | |
| B | | | 여, 부 | | | |
| C | | | 여, 부 | | | |
| D | | | 여, 부 | | | |
| E | | | 여, 부 | | | |
| 합 계 | - | - | - | ⑰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첨부서류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 | | |
| ⑰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 | | | |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내 별지 제10호서식(2018년 기준)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내 별지 제10호 서식 첨부서류 참조

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¹⁹⁾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을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기업임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크거나 같은 기업임
 - 이때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의미함²⁰⁾

-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해야 함
-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 혹은 근로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기한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들에 대해, 발생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정해진 비율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함
 -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이때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아래의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함
 -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의 합계액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19) 「조세제한특별법」 제24조의4
 20) 「조세제한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3항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과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추징함
 -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4의 제15항에 따라,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 관계 조기 종료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²¹⁾

$$\text{법 제29조의4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times \frac{\text{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 수}}{\text{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다만 앞서 언급한 요건 외에도 중소기업이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술한 공제 대신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음
 -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증가율이 음수가 아님
 - 이때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을 따름
 -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21)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3항

- 상기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함
- 이때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내 ‘별지 제10호3서식’ 및 ‘별지 제10호4서식’을 통해 규정한 바 있으며, 제출 시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음²²⁾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내 별지 제10호 서식 첨부서류 참조

[그림 II-3]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양식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 (앞쪽) |
|---|---------------|---------------------------|--------------------|
| 1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 3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 | | |
| 가. 세제지원 요건 : ㉞ > ㉟ 또는 ㉟ > ㊱ 이고, ㉟ ≥ ㉡이어야 함 | | | |
|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 | | |
| 상시근로자 수(=㉢/㉣) | | ㉤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과세연도 개월 수 |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 | |
| 평균임금(=㉩/㉪) | | ㉫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 ㉬ 상시근로자 수(=㉢-㉣)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 | |
| 평균임금(=㉯/㉰) | | ㉱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 ㉲ 상시근로자 수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 |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
|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3] | | | |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1+㉸))×㉣] | | | |
|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 ㉬, ㉭, ㉮의 계산 특례 | | |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2] | | |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
|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 | | |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 | | | |
|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 > 3.2%이며, ㉟ ≥ ㉡ 이고, ㉡ ≥ 0인 경우에 적용됨 | | | |
| ㉷ 중소기업 계산특례[=(㉩-㉣×(1+3.2%))×㉣] | | | |
| 4 세액공제액 [(㉯ 또는 ㉮) × 세액공제율(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 20%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신청인 |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그림 II-4]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양식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 | | |
|---|--|--|--|-------------------|
| 1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 |
| 2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
| 3 세액공제 요건 확인 (⑥ ≥ ⑦이어야 함) |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4 세액공제 계산내용 | | | | |
| 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 | | | |
| ⑧ 성명(생년.월.일) | ⑨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매월분의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 ⑩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정규직 전환 연월일) | ⑪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 7천 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 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이 아닐 것 | |
| A (.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
| B (.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
| C (.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
| D (.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
| E (.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
| 나. 세액공제액 | | | | |
| ⑫ 해당 과세연도 임금 | ⑬ 직전 과세연도 임금 | ⑭ 임금 증가분 합계액 (⑭-⑮) | ⑰ 공제율 | ⑱ 세액공제금액 (⑰×⑱) |
| A | | | | |
| B | | | | |
| C | | | | |
| D | | | | |
| E | | | | |
| 합 계 ⑭ | ⑮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신청인 | | | 년 월 일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 방법 | | | | |
| 1. ⑭란 및 ⑱란의 "합계"에는 임금 합계액을 적되,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
| 2. ⑰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그 외 기업은 5%를 적용합니다. | | | |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내 별지 제10호의4서식

라.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²³⁾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이 됨
-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함
-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함
 - 이때 상시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아래에 규정하는 임금 총액을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함²⁴⁾
 - 임금 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의 합계(단,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함
-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은 0%임²⁵⁾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함²⁶⁾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상기한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근거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연도 중 근로관계 성립한 자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함
- 상기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공제 금액은 아래 ①과 ②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함
 -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
 -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이와 함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이때 공제 가능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정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도 본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임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임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임

- 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지정된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때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내 ‘별지 제11호4서식’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함

[그림 II-5]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양식

|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 |
|--|--------------------------------|-------------------------------------|
| 1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전화번호: _____) | | |
| 2 과세연도 |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
| 3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 | |
| ⑥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⑨-⑫)×⑪×10% + (⑮-⑱×105%)×⑭×15%] | | |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
|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
|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
|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
|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
| ⑯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 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⑱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⑯÷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신청인 |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내 별지 제11호4서식

마. 소결

- (세액공제 특징) 고용분야 세액공제 중 보고서에서 다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조세지출 혜택을 받는 자(고용주)와 세액공제 요건의 대상자(근로자)가 다르며, 근로자 요건 충족, 사후 기간 피고용자 고용 유지 요건을 갖는 것이 특징임
- 고용분야 세액공제 중, 신규 고용 또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두는 세액공제는 타 세액공제와 달리 직접적인 조세지출의 혜택과 세액공제 신청은 고용주가 하며 근로자는 고용의 유지가 지원되면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구조임
 - 즉, 조세지출이 기업에서 근로자로 간접 전달되며, 세금 감면이 곧바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작용함
- 또한 고용지원 세액공제 중 고용 유지 조건의 사후관리를 갖는 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자의 요건을 따져 고용 유지와 관련된 계산이 필요하므로 단순 세율(%) 감면으로 공제하는 조세지출이나 고정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있음
- (행정비용) 고용분야 세액공제는 고용 활성화 및 안정적 노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유형에 따라 신청서별 신청 요건은 다르며 고용 유지와 관련한 사후관리의 경우 신청 납세자 및 과세관청 모두 검증, 추징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고용분야 세액공제는 고용 증가, 임금상승, 병역 이행 후 복직, 육아휴직 복귀 등의 다양한 고용 활동을 지원하며,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정 고용 대상자(예: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및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중심으로 고용 증가 및 특정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정기신고 시에는 세액공제 계산서 또는 신청서와 대상자 확인, 임금 지급 증빙 등의 자료 제출이 필수적임
-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를 받은 이후 2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추징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근로자 고용 현황 관리가 필요함

- 또한,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 유지 기간이 지난 이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신청자 모두 추가적인 검증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함

〈표 II-8〉 고용분야 세액공제 비교표

| 세액공제 유형 | 신청(신고) 시 검토 서류 및 확인 사항 | 제출 서류 | 사후관리 |
|--|--|--|---|
|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 증가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고용 증빙) • 근로자 유형별(상시근로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증빙서류 확인 •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신청서(지난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계산액 기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내 근로자 감소 시 공제 금액 반환(추징)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 이행 후 복직 조건 확인 (병역 이행 증명서)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내 인건비 지급 확인(원천 징수 영수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신청서(대상자 생년월일, 졸업학교명, 고용 일자, 복직 여부 등 기재)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증빙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 이행 및 복직 관리 및 고용 유지를 통한 임금 지급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증가율 계산 • 상시근로자 수 및 인원 유지 확인(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정규직 전환 증빙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신청서(지난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평균 임금 계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고용 중단시 공제 금액 반환(추징)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총액 감소 여부(급여 대장 등) • 상시근로자 수 유지 여부 확인(근로 시간 기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신청서(상시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요건 없음 |

주: 경정청구 시에는 추가 서류 검토 및 제출이 필요함
 자료: 본문 내용 토대로 저자 작성

- 이밖에도 고용분야 세액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 과정에서도 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정청구 시 기본 및 추가 제출 서류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나 납부 내역, 자격 취득 신고서 등이 요구됨
 - 각 공단과 국세청 간의 정보 공유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서류 제출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음

- 한편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저소득 납세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세액공제는 1차적인 세액 계산 후 해당 세액에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임
 - 이때 저소득 납세자의 경우 납세할 세액이 없거나 그 수준이 매우 낮아 세액공제를 아예 적용받지 못하거나 그 의미가 크게 낮아질 수 있음

Ⅲ. 고용분야 세액공제와 유사한 해외사례 검토

1. 미국

가. 근로기회 세액공제(WOTC, Work Opportunity Tax Credit)

- 근로기회 세액공제(WOTC, Work Opportunity Tax Credit)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장려를 위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1조를 근거로 하는 일반 사업 세액공제임
 - 근로기회 세액공제는 노동부 산하 지정된 지역 기관이나 주정부 인력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및 인증을 받은 특정 개인을 고용해야 적용됨
 - 해당 공제는 총 10가지로 구성된 세액공제 대상 그룹 중 하나에 속하는 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정해진 특정 그룹에 속하는 개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규모와 상관없는 모든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에 대한 일반 사업 세액공제로서 정해진 양식 제출을 통해 국세청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즉 세액공제 신청은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대상자에 대한 인증은 노동부(DOL, Department of Labor) 소관임²⁷⁾
 - 세액공제액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실제 근무한 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4년도 기준, 기존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을 시작한 적격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

27) United States Code, 26 USC 51: Amount of credit,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26%20section:51%20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26%20section:51%20edition:prelim)), 검색일자: 2024. 10. 12.

- (대상자) 근로기회 세액공제 신청 조건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며 인증된 지원 대상 취약계층 또는 그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 대상 그룹별로 각기 다른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대상자 그룹에 있는 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10가지 그룹으로 구분된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나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 등 그룹별 상세 조건이 다르며 아래와 같음
 - ① 사회보장법 IV-A(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승인된 주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받는 수혜자와 그 가족 구성원
 - ② 전역 군인(Veterans)
 - ③ 빈곤가정 일시 부조 제도²⁸⁾(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수혜자와 그 가족
 - ④ 증범죄로 수감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자
 - ⑤ 권한 강화구역(EZ, An Empowerment Zone²⁹⁾) 또는 농촌 재개발 지역(RRC, A Rural Renewal Country³⁰⁾)으로 지정된 지역의 거주민으로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 ⑥ 직업 재활 관련 프로그램(Vocational rehabilitation referral)을 완료하여 추천된 자
 - ⑦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여름 청소년 근로자(Qualified summer youth employee)
 - ⑧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수혜자와 그 가족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 ⑨ 일정 자격을 갖춘 보충 소득보장(SSA,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혜자

28) 사회보장법(SSA, Social Act Title) IV Part A에 따르는 제도임

29) 권한 강화구역이란 정부가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의미함

30) 1990년부터 1994년 및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각 5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농촌 지역으로 정해져 있음

- ⑩ 27주 연속 장기실업자로 실업 기간 중 실업수당을 받은 자

□ (신청 조건 및 공제액) 재고용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공제 신청 금액 한도를 두어 신청 시기, 신청 대상자, 제공 근로 시간을 신청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두고 있음

- ① 고용된 후 첫해일 것
- ② 세액공제 대상 그룹의 구성원으로 인증된 자를 고용할 것
- ③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주를 위해 최소 40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것
- 단, 근로 시간 12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의 근로를 수행한 개인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나 더 낮은 25% 세액공제율이 적용됨
- 신규 고용된 직원이 대상이며 재고용된 직원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자 고용으로 지급된 최대 USD 6,000³¹⁾ 임금의 40%가 세액공제액에 해당하므로 최대 USD 2,400³²⁾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사업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owed) 금액을 한도로 함³³⁾

- 단, 일부 재향군인 등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USD 9,600³⁴⁾까지 한도액을 두고 있음

□ 근로기회 세액공제액 계산에 사용되는 지급된 급여액은 금액 기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나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이 가능함

○ 근로기회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사용된 급여액은 다른 급여 기반 세액공제 계산에는 사용될 수 없으나, 고용주는 동일한 직원에 대해 조건을 충족하는 두 개 이상의 급여 관련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근로기회 세액공제 신청에 사용된 동일 급여액이 직원 유지 세액공제(ERC, Employee Retention Credit)³⁵⁾에서 중복으로 사용 불가능함³⁶⁾

31)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7만원

32)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7만원

33) IRS, "Work Opportunity Tax Credit,"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ork-opportunity-tax-credit>, 검색일자: 2024. 10. 9.

34)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14만원

35)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 3월~2021년 12월 31일 한시적 기간 동안 수입이 감소한 일부 기

- 근로기회 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적격 임금(Qualified Wages)’이란 고용에 대한 모든 보수를 의미하며 특정 비과세 혜택 등 정해진 제외 항목을 제외한 모든 대가를 의미함³⁷⁾
 - 근로기회 세액공제에서 계산 대상인 고용의 대가로 지불된 금액은 연방세법으로 정해진 ‘임금’의 기준에 따르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직접적인 현금 보상 및 기타 보상으로 보너스,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포함하며 제외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 **(절차)** ① 근로자 사전 심사 ② 대상자 인증 ③ 세금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세 단계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정해진 노동부 관련 기관에 심사 및 인증받아 정기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 그룹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 노동청 (SWA, State Workforce Agency)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함
 - 구직자가 사전 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채용일 또는 구직자 채용 이전에 Form 8850(Pre-Screening Notice and Certification Request for the Work Opportunity Credit)를 작성하여 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함
 - Form 8850은 구직자와 고용주의 인적 사항, 고용 관련 날짜, 근로 세액공제 대상자 그룹 여부, 제출하는 정보의 위증죄에 대한 서명, 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서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고용주는 IRS Form 8850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나 문의가 있을 때, 국세청이 아닌 주 노동청에 문의해야 함

업에 대하여 고용세(employment tax)에 대하여 환급해 준 세액공제 <https://www.irs.gov/coronavirus/employee-retention-credit>

36) IRS, “Work Opportunity Tax Credit,”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ork-opportunity-tax-credit>, 검색일자: 2024. 10. 9.

37) Tax Note, Sec. 3306 Definitions, <https://www.taxnotes.com/research/federal/usc26/3306>, 검색일자: 2025. 1. 21.

- 접수된 서류는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 인증서(Approval Certification) 형태로 고용주들에게 발행되고 정해진 계산된 세금 공제액만큼 고용주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세액공제가 진행됨³⁸⁾
 - 신청자는 IRS Form 8850 관련 근로기회 세액공제 담당자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 및 담당자로부터 받은 인증서 사본 등을 소득세 신고서 만기 또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³⁹⁾
- 대상자 인증 후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근로기회 세액공제 총괄 내용을 Form 3880 내 Part 3 당해 일반사업 세액공제표 4(b) 항목에 기재하고, 그 산출 상세 내역은 근로기회 세액공제 신청 양식인 Form 5884에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함
- Form 3800의 Part5 항목을 통해 다른 사업 세액공제의 통합 및 조정하여 미사용 근로기회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월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시 사업 소득세에 대한 일반 사업 세액공제로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다음 [그림 III-2]에서 붉은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세액공제 신청 양식인 Form 3880 내에서 당해 연도 근로기회 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며, [그림 III-3]에서 Form 5884 양식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I-1] 미국 일반 사업 세액공제 신청 양식 중 근로기회 세액공제 작성란(From 3800)

| Form 3800 (2023) Page 4 | | | | | | | | | |
|---|--|---------|--|-------------------------------------|---------------------------------|--|--|--------------------------------------|--|
| Part III Current Year General Business Credits (GBCs) (see instructions). If there is more than one credit amount to report on lines 1a through 1zz, line 3, or lines 4a through 4z, enter the number of items you have for that line in column (c) and complete Part V. (continued) | | | | | | | | |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 Current year credits from: | Elective payment or transfer registration number | # items | Pass-through or transfer credit entity EIN | Credits from non-passive activities | Credits from passive activities | Credit transfer election amount (enter election amount transferred out as a negative amount) | Gross elective payment election amount | Net elective payment election amount | Combine columns (e), (f), and (g), less column (i) |
| 3 Form 8844 | | | | | | | | | |
| 4 Specified credits: | | | | | | | | | |
| a Form 3468, Part VI | | | | | | | | | |
| b Form 5884 | | | | | | | | | |
| c Form 6478 | | | | | | | | | |
| d Form 8586 | | | | | | | | | |
| e Form 8835, Part II | | | | | | | | | |
| f Form 8846 | | | | | | | | | |

자료: IRS, "Form 3880, General Business Credit," <https://www.irs.gov/pub/irs-pdf/f3800.pdf>, 검색일자: 2024. 11. 25.

38) Korea Times, "Work Opportunity Tax Credit," <http://la.koreatimes.com/article/20180214/1158654>, 검색일자: 2024. 10. 11.

39) IRS, "Instructions for Form 8850(03/2021)," <https://www.irs.gov/instructions/i8850>, 검색일자: 2024. 10. 9.

[그림 III-2] 미국 근로기회 세액공제 명세서 양식(Form 5884)

| | | |
|--|---|--|
| Form 5884 (Rev. March 2021)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 Work Opportunity Credit ▶ Attach to your tax return. ▶ Go to www.irs.gov/Form5884 for instructions and the latest information. | OMB No. 1545-0219 Attachment Sequence No. 884 |
| Name(s) shown on return | | Identifying number |
| 1 Enter on the applicable line below the total qualified first- or second-year wages paid or incurred during the tax year, and multiply by the percentage shown, for services of employees who are certified as members of a targeted group. | | |
| a Qualified first-year wages of employees who worked for you at least 120 hours but fewer than 400 hours \$ _____ × 25% (0.25) | 1a | |
| b Qualified first-year wages of employees who worked for you at least 400 hours \$ _____ × 40% (0.40) | 1b | |
| c Qualified second-year wages of employees certified as long-term family assistance recipients \$ _____ × 50% (0.50) | 1c | |
| 2 Add lines 1a, 1b, and 1c. See instructions for the adjustment you must make to your deduction for salaries and wages | | |
| 3 Work opportunity credit from partnerships, S corporations, cooperatives, estates, and trusts (see instructions) | | |
| 4 Add lines 2 and 3. Cooperatives, estates, and trusts, go to line 5. Partnerships and S corporations, stop here and report this amount on Schedule K. All others, stop here and report this amount on Form 3800, Part III, line 4b | | |
| 5 Amount allocated to patrons of the cooperative or beneficiaries of the estate or trust (see instructions) | | |
| 6 Cooperatives, estates, and trusts, subtract line 5 from line 4. Report this amount on Form 3800, Part III, line 4b | | |
| For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see separate instructions. Cat. No. 13570D Form 5884 (Rev. 3-2021) | | |

1.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성하세요:
 과세 연도 중 지급되었거나 발생한 자격 있는 1년 차 또는 2년 차 임금의 총액을 기재하고, 지정된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당 임금은 목표로 하는 집단 구성원(Targeted group)으로 인증된 직원의 서비스에 지급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 a. 자격을 갖춘 1년 차 직원, 최소 12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 근무한 직원의 임금:
 금액 × 25% (0.25) → 1a
 - b. 자격을 갖춘 1년 차 직원, 최소 40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임금:
 금액 × 40% (0.40) → 1b
 - c. 장기 가족 지원 수혜자로 인증된 자격을 갖춘 2년 차 직원
 금액 × 50% (0.50) → 1c
2. 1a, 1b, 1c 합계에서 세금 조정에 필요한 급여 및 임금 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 2
3. 파트너십, S 법인, 협동조합, 부동산, 신탁으로부터 발생한 Work Opportunity Credit (세부 지침 참조) → 3
4. 파트너십 및 S 법인: 2번과 3번 항목의 합계를 기입한 후, 이를 Schedule K에 보고합니다. 기타 항목은 Form 3800, Part III, line 4b에 보고합니다.
 기타 법인, 부동산, 신탁: 협동조합에 분배된 금액을 기재 (지침 참조) → 4
5. 협동조합, 부동산, 신탁의 경우: 5번 항목의 금액을 1번에서 차감합니다. 그 결과를 Form 3800, Part III, line 4b에 보고합니다. → 5
6. 협동조합, 부동산, 신탁의 경우: 5번 항목의 금액을 1번에서 차감합니다. 해당 금액을 Form 3800, Part III, line 4b에 보고합니다. → 6

자료: IRS, "Form 5884, Work Opportunity Credit," <https://www.irs.gov/pub/irs-pdf/f5884.pdf>, 검색일자: 2024. 11. 25.

2. 캐나다

- 캐나다는 견습 혹은 교육 훈련 등에 연관된 고용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및 일부 주 정부에서 별도의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경우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에서 특정 견습생의 고용 시 그 임금의 일부를 연방정부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매니토바 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등에서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주정부 법인세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가. 연방정부: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1) 적용 대상 및 요율

- 캐나다 국세청은 2006년 5월 1일 이후 고용된 적격 견습생에게 지급하는 적격 급여 및 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 불가능한 공제를 제공하는,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⁴⁰⁾
 - 이때 적격 견습생이란 연방정부 또는 캐나다 내 주정부의 견습 약정에 등록하고 약정 첫 24개월 동안 해당 직업을 인증하거나 면허를 부여하도록 설계된 ‘레드씰 프로그램(International Standards Red Seal Program)’에 따라 주 또는 캐나다에서 규정된 직업에 고용된 개인을 의미함⁴¹⁾
 - 공제는 2006년 5월 2일 이후 과세 연도 동안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캐나다 납세자의 적격 견습생의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견습생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격 급여 및 보수의 10%로, 최대 2천캐나다달러까지 인정됨⁴²⁾

40) Government of Canada, “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41200-investment-tax-credit/apprenticeship-job-creation-tax-credit.html>, 검색일자: 2024. 7. 16.

41) Income Tax Act Section 127(9) : Eligible apprentice

- 이때 적격 급여 및 보수란 견습 기간의 첫 24개월간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 수당, 이익에 따른 보수 등을 의미함⁴³⁾

- 이때 납세자의 과세 연도 내에 특정 적격 견습생이 본인과 타 납세자에게 동시에 고용된 경우, 규정된 양식에 따라 본 납세자가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고용주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음⁴⁴⁾

□ 적격 견습생 기준이 되는 레드씰 프로그램은 캐나다 전역의 기술자들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임

- 본 프로그램은 표준 시험 실시를 통해 기술자에게 해당 분야의 국가 표준이 요구하는 지식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레드씰 인증을 부여함
- 시험의 기준이 되는 레드씰 인증의 표준 사항은 다음 항목과 같음⁴⁵⁾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및 하위 업무와 같은 사업 활동 • 핵심 기술의 요약 • 약어 • 안전 정보 • 학습 목표 및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지식 요구 사항 • 기술 용어 • 도구 및 장비의 이름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 • 업계 기대 성과 |
|--|--|

- 현재 레드씰 프로그램이 인증하는 기술자 목록은 다음과 같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가/장식가, 제빵사, 요리사, 헤어 스타일리스트, 조경사, 농업 장비 기술자 • 목수, 가구 제작자, 금속제작자, 판금 작업자, 도구 및 금형 제작자 • 가스기술자(A급 및 B급), 오일히팅 기술자, 보일러공, 실내 시스템 정비사, 전력선 기술자, 가전 서비스 기술자, 냉장 및 에어컨 정비사, 스프링클러 설비공 • 유리공, 기계공, 용접공, 벽돌공, 타일공, 지붕공, 배관공, 절연공(열 및 소리) 철근공(일반, 보강, 구조 및 장식), 건식벽체 마무리공 및 석고공 • 건설 기술 노동자, 건설 전기 기술자, 콘크리트 피니셔 작업자 |
|---|

42) Income Tax Act Section 127(9) : Apprenticeship expenditure
 43) Income Tax Act Section 127(9) : Eligible salary and wages
 44) Income Tax Act Section 127(11.4)
 45) Red Seal, "What is an Occupational Standard?," <https://www.red-seal.ca/eng/resources/wh.1t.3sn.4.1.shtml>, 검색일자: 2024. 10. 15.

- 산업 전기 기술자, 산업 기계공, 계측 및 제어 기술자, 증기 및 파이프 설비공
- 자동차 차체 및 충돌 기술자, 자동차 재도장 기술자, 자동차 서비스 기술자, 레크레이션 차량 서비스 기술자, 오토바이 기술자·중장비 기술자, 운송 트레일러 기술자, 트럭 및 운송 정비사, 중장비(불도저, 굴삭기, 트랙터 등) 운전자, 모바일 크레인 운전자, 타워크레인 운전자

- 본 프로그램은 1952년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 사업 및 산업 견습 회의(National Conference on Apprenticeship in Trades and Industries)’를 통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현재 캐나다 견습생 감독위원회(The Canadian Council of Directors of Apprenticeship, 이하 CCDA)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음
 -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에서 CCDA 사무국을 지원함
 - 또한 연방정부 및 모든 주정부는 CCDA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관할권 내에서 시험의 실시와 같은 프로그램의 관리 및 인증을 담당함

2) 신청 방법

-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는 ‘법인 투자 세액공제(ITC) 작성 양식(TSCH31)’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⁴⁶⁾
 - 투자 세액공제는 적격 자산 및 지출(SR&ED), 사전 채굴 활동(pre-production mining), 견습생 고용 등에 대해 적용됨
 - 투자 세액공제 신청 양식 내에서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와 관련한 작성 항목은 Part 19~21로, 해당 부분을 아래 표에서 해당 양식을 원문 및 국문으로 정리함

46) Government of Canada, “T2SCH31 Investment Tax Credit - Corporation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t2sch31.html>, 검색일자: 2024. 7. 16.

[그림 III-3] 캐나다 법인 투자세액공제 양식(T2SCH31) 내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작성 항목

Part 19 – Total current-year credit – ITC from apprenticeship job creation expenditures

If you are a related person as defined under subsection 251(2), has it been agreed in writing that you are the only employer who will be claiming the 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for this tax year for each apprentice whose contract number (or social insurance number (SIN) or name) appears below? (If not, you cannot claim the tax credit.) **611** Yes No

For each apprentice in their first 24 months of the apprenticeship, enter the apprenticeship contract number registered with Canada, or a province or territory, under an apprenticeship program designed to certify or license individuals in the trade. For the province, the trade must be a Red Seal trade. If there is no contract number, enter the SIN or the name of the eligible apprentice.

| A Contract number (SIN or name of apprentice) 601 | B Name of eligible trade 602 | C Eligible salary and wages* 603 | D Column C × 10% 604 | E Lesser of column D or \$2,000 605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Total current-year credit (total of column E) Enter on line 640 in Part 20. | | | | 19A |

* Other than qualified expenditure incurred, and net of any other government or non-government assistance received or to be received. **Eligible salary and wages, and qualified expenditures** are defined under subsection 127(9).

Part 19 - 현재 연도 총 세액공제 : 견습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 세액공제

귀하가 251(2)항에 정의된 특수 관계인인 경우, 아래에 계약번호(혹은 사회보험번호(SIN)나 이름)가 표시된 각 견습 직원에 대해 이번 과세 연도에 견습 일자리 창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유일한 고용주라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11** 예 아니오

견습 약정 첫 24개월 동안 각 견습생에게 부여된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혹은 준주)의 견습 약정 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직종의 개인임을 인증하거나, 면허를 발급하도록 설계된 견습 프로그램에 따라 견습생이 등록된 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정부 약정의 경우 레드씰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사업이어야 하며, 약정 번호가 없는 경우 SIN 또는 자격을 갖춘 견습생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A 견습 약정 번호 (SIN 혹은 이름) 601 | B 적격 직종명 602 | C 적격급여 및 보수 603 | D C×10% 604 | E D와 CAD2,000 중 적은 것 605 |
|--|---------------------------|------------------------------|--------------------------|---------------------------------------|
| 1 | | | | |
| 2 | | | | |
| 총 당기 세액공제(E열 합산액) Part20 640 항목에 기재 | | | | 19A |

[그림 III-3]의 계속

| Part 20 – Current-year credit and account balances – ITC from apprenticeship job creation expenditures | | | |
|--|-----|-----|-----|
| ITC at the end of the previous tax year | | | 20A |
| Credit deemed as a remittance of co-op corporations | 612 | | |
| Credit expired after 20 tax years | 615 | | |
| Subtotal (line 612 plus line 615) | | | 20B |
| ITC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amount 20A minus amount 20B) | | 625 | |
| Credit transferred on an amalgamation or the wind-up of a subsidiary | 630 | | |
| ITC from repayment of assistance | 635 | | |
| Total current-year credit (amount 19A) | 640 | | |
| Credit allocated from a partnership | 655 | | |
| Subtotal (total of lines 630 to 655) | | | 20C |
| Total credit available (line 625 plus amount 20C) | | | 20D |
| Credit deducted from Part I tax | 660 | | |
| Credit carried back to previous years (amount 21A) | | | 20E |
| Subtotal (line 660 plus amount 20E) | | | 20F |
| ITC closing balance from apprenticeship job creation expenditures (amount 20D minus amount 20F) | | 625 | |

Part 20 - 당기 세액공제 및 잔액 : 견습 일자리 창출 공제 지출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최종 투자세액공제액 | | | 20A |
| Co-op에서 지급한 금액 관련 세액공제 | 612 | | |
| 20 과세연도 후 만료된 세액 | 615 | | |
| 소계(612와 615의 합산액) | | | 20B |
| 과세연도 초의 투자세액공제액(20A에서 20B를 뺀 금액) | | 625 | |
| 합병 또는 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양도된 세액공제액 | 630 | | |
| 지원금 상환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액 | 635 | | |
| 총 당기 세액공제액 (19A금액) | 640 | | |
| 파트너십에 할당된 세액공제 | 655 | | |
| 소계(630부터 655까지의 합산액) | | | 20C |
| 총 세액공제 합계액(625와 20C의 합산액) | | | 20D |
| Part1에서 공제된 세액공제액 | 660 | | |
| 전년도로 이월된 세액공제액(21금액) | | | 20E |
| 소계(660과 20E의 합산액) | | | 20F |
| 견습 일자리 창출 지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결산액(20D에서 20F를 뺀 금액).. | | 625 | |

[그림 III-3]의 계속

| Part 21 – Request for carryback of credit from apprenticeship job creation expenditures | | | | | | | | | | |
|--|------|-------|--------|-----------------|----------------------|------------|----------------|-----|-----|--|
| 1st previous tax year | Year | Month | Day | | Credit to be applied | 931 | _____ | | | |
| 2nd previous tax year | | | | | Credit to be applied | 932 | _____ | | | |
| 3rd previous tax year | | | | | Credit to be applied | 933 | _____ | | | |
| Total of lines 931 to 933 | | | | | | | _____ | 21A | | |
| Enter at amount 20E. | | | | | | | ===== | | | |
| <small>Page 10 of 12</small> | | | | | | | | | | |
| Protected B when completed | | | | | | | | | | |
| Corporation's name | | | | Business number | | | Tax year-end | | | |
| | | | | | | | Year Month Day | | | |
| | | | | | | | | | | |
| Part 21 – Request for carryback of credit from apprenticeship job creation expenditures | | | | | | | | | | |
| | 년 | 월 | 일 | | 적용 세액공제액 | 931 | _____ | | | |
| 첫 번째 과세연도 | | | | | 적용 세액공제액 | 932 | _____ | | | |
| 두 번째 과세연도 | | | | | 적용 세액공제액 | 933 | _____ | | | |
| 세 번째 과세연도 | | | | | 적용 세액공제액 | 933 | _____ | | | |
| 931부터 933 합산액 | | | | | | | _____ | | 21A | |
| Part20 20E에 기재 | | | | | | | ===== | | | |
| 법인명 | | | 사업자 번호 | | | 최종 과세연도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자료: Government of Canada, "Investment Tax Credit - Corporations (2022 and later tax years)(T2SCH31),"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t2sch31/t2sch31-24e.pdf>, 검색일자: 2024. 7. 16.

나. 주정부

1) 매니토바 주

- 매니토바 주는 '근로경험 세액공제(paid work experience tax credit)'를 통해 청소년 근로경험 고용, Co-op 재학생 및 졸업생 고용, 견습생 고용, 도제 과정 (journey person) 고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때 대상 임금은 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됨
- 각 고용 유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자격 요건과 공제액 수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III-1〉 캐나다 매니토바 주의 근로경험 세액공제 종류

| 세액공제 종류 | 분류 | 내용 |
|-------------------|------|---|
| 청소년 근로 경험 인센티브 | 자격요건 | - 승인된 고등학교 과정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개인에게 유급 근로경험을 제공하도록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고용주 |
| | 공제액 | - 해당 청소년에게 지급된 임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후 25%를 공제 - 1인당 평생 최대 CAD 5,000까지 공제 허용 |
| Co-op 재학생 고용 인센티브 | 자격요건 | - 적격 협동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 |
| | 공제액 | - 매니토바 주 내에서 주로 수행한 작업에 대해 지급된 임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후 15%를 공제 - 1인당 평생 최대 CAD 5,000까지 공제 허용 |
| Co-op 졸업생 고용 인센티브 | 자격요건 | - 고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인증받은 협동조합 졸업생을 졸업 후 18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고용주 |
| | 공제액 | - 임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후 15%를 취업 후 첫 2년간 매년 최대 CAD 2,500까지 공제 허용 |
| 견습생 고용 인센티브 | 자격요건 | -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견습생을 고용하는 고용주 |
| | 공제액 | - 1인당 연 최대 CAD 5,000까지 공제를 허용하며, 상황에 따라 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 · 일반적으로는 15% · 위니펙 외부에 거주하고 위니펙 외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0% · 고등학생 견습생의 경우 25% |
| 도제과정 고용 인센티브 | 자격요건 | - 자격 증명을 받은 도제과정 프로그램 졸업자를 졸업 후 18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고용주 |
| | 공제액 | - 임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후 15%를 취업 후 첫 2년간 매년 최대 CAD 5,000까지 공제 허용 - 원칙적으로 고용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하나, 계절적 요인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중단 가능 |

자료: Government of Canada, "T2 Corporation-Income Tax Guide-2023 : Manitoba paid work experience tax credit,"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publications/publications/t4012/t2-corporation-income-tax-guide-chapter-8-page-9-t2-return.html#mb_coop2, 검색일자: 2024. 7. 16.

- 매니토바 주의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계산 보충자료 양식⁴⁷⁾인 Schedule 5에 최종 공제액을 기재하고, 매니토바 주 근로경험 세액공제 신고서인 Schedule 384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Schedule 384(매니토바 주 근로경험 세액공제 신고서)에 공제액의 상세 산출 내역을 작성하며, 다음 표에서는 청소년 근로경험 인센티브의 양식을 예시로 제시함
 - 이후 Co-op 재학생 및 졸업생 고용, 견습생 고용, 도제 과정 고용 인센티브 역시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며, 본 양식을 통해 작성된 모든 항목의 합산액을 Schedule 5의 622번 항목에 기재함

[그림 III-4] 캐나다 매니토바 주 Schedule 384 중 청소년 근로경험 인센티브 작성 항목

| Part 1 – Youth work experience hiring incentive | | | |
|--|---|----------------|--|
| A1 Name of qualifying youth 150 | B1 Salary and wages paid * 155 | C1 B1 x 25% | D1 Lesser of C1 and maximum amount ** 1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Credit allocated for qualifying youths whose salaries and wages were paid by a partnership | | | 175 |
| Youth work experience hiring incentive (total of column D1 plus line 175) | | | 180 |

* Less the amount of any other government assistance received or receivable.

** The lifetime maximum amount is \$5,000 per qualifying youth for all qualifying periods of employment. The maximum amount you can claim for a tax year is \$5,000 less the amount of the incentive claimed for a previous period of employment of that youth. If the qualifying youth has more than one employer, column D1 is equal to the lesser of C1 and the maximum amount, multiplied by A/B, where:

A = total salary and wages you paid to the qualifying youth for the qualifying period of employment.

B = total salary and wages paid by all employers to the qualifying youth for the qualifying period of employment.

47) 2개 이상의 주정부에 상설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나, 주정부의 세액공제 및 환급을 청구하는 법인을 위한 양식임

[그림 III-4]의 계속

| Part 1 - 청소년 근로경험 인센티브 | | | |
|--------------------------------|-------------------------------------|--------------|---|
| A1 적격 청소년의 성명 150 | B1 지급된 급여 및 보수* 155 | C1 B1×25% | D1 C1과 한도액 중 적은 것** 170 |
| | | | |
| | | | |

파트너십에서 급여 및 임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춘 청소년에게 적용된
세액공제액 **175**

청소년 근로경험 채용 인센티브(D1 + 175) **180**

* 기타 정부지원 적용 가능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평생 최대 지원 금액은 모든 적격 고용 기간에 대해 1인당 5천달러입니다. 과세연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해당 청소년의 이전 고용 기간 동안 청구한 인센티브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적격 청소년이 두 명
 이상의 고용주를 두고 있는 경우, D1열은 C1과 최대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에 A/B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때,
 A = 적격 고용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청소년에게 지급한 총급여 및 임금
 B = 적격 고용기간 동안 모든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청소년에게 지불한 총 급여 및 임금

자료: Government of Canada, "Manitoba Paid Work Experience Tax Credit (2018 and later tax years),"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t2sch384/t2sch384-21e.pdf>, 검색 일자: 2024. 10. 15.

- 매니토바 주 근로경험 세액공제의 최종 공제액을 기재하는 Schedule 5(법인세 계산 보충자료 양식)의 622번 항목은 다음 그림에서 붉은색 박스로 표시함

[그림 III-5] 캐나다 Schedule 5 내 매니토바 주 근로경험 세액공제액 작성 항목

| Part 2 – Provincial and territorial tax payable, tax credits, and rebates (continued) | | |
|---|-----|-----|
| Manitoba | | |
| Manitoba tax before credits (from Schedule 383) | | 230 |
| Manitoba foreign tax credit (from Schedule 21) | 601 | |
| Manitoba rental housing construction tax credit (from Schedule 394) | 602 | |
| Manitoba non-refundable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from Schedule 381) | 605 | |
| Manitoba non-refund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from Schedule 380) | 606 | |
| Manitoba non-refundable odour-control tax credit (from Schedule 385) | 607 | |
| Manitoba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tax credit (from Schedule 387) | 608 | |
| Manitoba non-refundable cooperative development tax credit (from Schedule 390) | 609 | |
| Manitoba non-refundable tax credits (total of lines 601 to 609) | | 6A |
| Total Manitoba tax payable before refundable tax credits (line 230 minus amount 6A) (if negative, enter "0") | | 6B |
| Manitoba cultural industries printing tax credit | 611 | |
| Manitoba refund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from Schedule 380) | 613 | |
| Manitoba interactive digital media tax credit | 614 | |
| Manitoba book publishing tax credit (from Schedule 389) | 615 | |
| Manitoba green energy equipment tax credit | 619 | |
| Manitoba film and video production tax credit (from Schedule 388) | 620 | |
| Manitoba refundable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from Schedule 381) | 621 | |
| Manitoba paid work experience tax credit (from Schedule 384) | 622 | |
| Manitoba data processing investment tax credits (from Schedule 392) | 324 | |
| Manitoba community enterprise development tax credit | 327 | |
| Manitoba child care centre development tax credit | 328 | |
| Certificate number | 889 | |
| Manitoba refundable tax credits (total of lines 611 to 622 plus lines 324 to 328) | | 6C |
| Net Manitoba tax payable or refundable tax credit (amount 6B minus amount 6C) (if a credit, enter amount in brackets). Include this amount on line 255 on page 8. | | 234 |

자료: Government of Canada, "Tax Calculation Supplementary - Corporations (2023 and later tax years),"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t2sch5/t2sch5-12-23e.pdf>, 검색일자: 2024. 10. 15.

2)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로 훈련 세액공제(training tax credit)을 마련하고 있음

- 과세 대상 법인으로서 주 내에 상설 사업장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기술사업부(Skilled Trade BC)'에서 관리하는 규정 프로그램에 등록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됨
- 자격을 갖춘 직원 한 명당 세 가지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을 해당 연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유형과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표 III-2〉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훈련 세액공제 상세

| 분류 | 내용 |
|---------------------------|--|
| 기본 세액공제 (basi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레드실 프로그램의 첫 24개월 견습생에 지급한 급여의 20%를 최대 CAD 4,000까지 공제 - 연방정부의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청구 불가능 |
| 프로그램 완료 세액공제 (comple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드실 혹은 비레드실 프로그램의 레벨3 또는 4를 완료한 견습생에 지급한 임금의 15%를 최대 CAD 3,000까지 공제 |
| 향상 세액공제 (enhanc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디언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이거나 소득세 신고서상 장에 관련 적격 견습생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대해 공제를 허용 · 레드실 프로그램의 첫 24개월 동안, 지정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5.5%를 1인당 최대 CAD 1,000까지 공제 · 비레드실 프로그램의 첫 24개월 동안, 지정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30%를 1인당 최대 CAD 6,000까지 공제 · 레드실 혹은 비레드실 프로그램의 레벨3 또는 4를 완료한 견습생에 지급한 임금의 22.5%를, 3단계의 경우 1인당 CAD 3,750까지, 4단계의 경우 CAD 4,500까지 공제 |

자료: Government of Canada, “T2 Corporation-Income Tax Guide-2023 : British Columbia training tax credit,”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12/t2-corporation-income-tax-guide-chapter-8-page-9-t2-return.html#BCTTC>, 검색일자: 2024. 7. 16.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계산 보충자료 양식⁴⁸⁾인 Schedule 5에 최종 공제액을 기재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훈련 세액공제 신고서인 Schedule 428을 함께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Schedule 428(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훈련 세액공제 신고서)에 공제액의 상세 산출 내역을 작성하며, 다음 표에서는 ‘완료 세액공제(completion tax credit)’ 양식을 예시로 제시함
 - 이와 유사한 양식으로 제시된 기본 세액공제와 향상 세액공제의 양식까지 작성하여, 세 가지 공제의 합산액을 Schedule 5의 679번 항목에 기재함

48) 2개 이상의 주정부에 상설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나, 주정부의 세액공제 및 환급을 청구하는 법인을 위한 양식임

[그림 III-6]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Schedule 428 중 프로그램 완료 세액공제 작성 항목

Part 2 – Completion tax credit (Red Seal and non-Red Seal apprenticeship programs)

Calculation for an employee who has completed level three of an eligible apprenticeship program. Do not include employees for whom you are claiming the enhanced tax credit in Part 3.
To claim this credit, enter on line 210 the salary and wages* payable in the 12 months just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level.

| A2 SkilledTradesBC identification number (or employee's SIN or name) | B2 Name of program | C2 Salary and wages* | D2 Column C2 × 15% | E2 Lesser of column D2 or \$2,500 |
|--|-----------------------|-------------------------|--------------------------|---|
| 200 | 205 | 210 | 215 | 220 |
| | | | | |
| | | | | |
| | | | | |
| Total | | | | B |

Calculation for an employee who has completed level four of an eligible apprenticeship program
To claim this credit, enter on line 310 the salary and wages* in the 12 months just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level.

| A3 SkilledTradesBC identification number (or employee's SIN or name) | B3 Name of program | C3 Salary and wages* | D3 Column C3 × 15% | E3 Lesser of column D3 or \$3,000 |
|--|-----------------------|-------------------------|--------------------------|---|
| 300 | 305 | 310 | 315 | 320 |
| | | | | |
| | | | | |
| | | | | |
| Total | | | | C |

* Net of any other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ssistance received, to be received, or that you are entitled to receive, other than the training tax credit, the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industry tax credit, and the federal investment tax credit on apprenticeship job creation.

Part 2 - 프로그램 완료 세액공제(레드씰 및 비레드씰 견습 프로그램)

적격 수습 프로그램의 레벨3을 완료한 직원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후 Part 3에서 강화된 세금 공제를 청구하는 직원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10항에 레벨 완료 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급여 및 보수*를 입력합니다.

| A2 BC주 기술사업부 등록번호 (SIN 혹은 이름) | B2 프로그램명 | C2 적격급여 및 보수 | D2 C2 × 15% | E2 D와 CAD2,500 중 적은 것 |
|-------------------------------------|-------------|--------------------|----------------|-----------------------------|
| 200 | 205 | 210 | 215 | 220 |
| | | | | |
| | | | | |
| 합계 | | | | B |

적격 수습 프로그램의 레벨4를 완료한 직원에 대한 계산입니다.

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310항에 레벨 완료 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급여 및 보수*를 입력합니다.

| A3 BC주 기술사업부 등록번호 (SIN 혹은 이름) | B3 프로그램명 | C3 적격급여 및 보수 | D3 C2 × 15% | E3 D와 CAD3,000 중 적은 것 |
|-------------------------------------|-------------|--------------------|----------------|-----------------------------|
| 300 | 305 | 310 | 315 | 320 |
| | | | | |
| | | | | |
| 합계 | | | | C |

훈련 세액공제, 조선 및 선박 수리 산업 세액공제, 연방정부의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기타 정부 및 비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료: Government of Canada, "British Columbia Training Tax Credit (2020 and later tax years),"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t2sch428/t2sch428-23e.pdf>, 검색일자: 2024. 10. 15.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훈련 세액공제의 최종 공제액을 기재하는 Schedule 5(법인세 계산 보충자료 양식)의 679번 항목을 다음 그림에서 붉은색 박스로 표시함

[그림 III-7] 캐나다 Schedule 5 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훈련 세액공제액 작성 항목

Protected B when completed

Part 2 – Provincial and territorial tax payable, tax credits, and rebates (continued)

British Columbia

| | | |
|---|------------|----|
| British Columbia tax before credits (from Schedule 427) | 240 | |
| Recapture of British Columbia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 tax credit (from Form T666) | 241 | |
| Gross British Columbia tax (line 240 plus line 241) | | 8A |
| British Columbia foreign tax credit (from Schedule 21) | 650 | |
| British Columbia logging tax credit | 651 | |
| British Columbia farmers' food donation tax credit (from Schedule 2) | 683 | |
| British Columbia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tax credit | 656 | |
| Credit at the end of previous tax year | 880 | |
| Credit transferred on an amalgamation | 883 | |
| Current-year credit | 881 | |
| Certificate number (from SBVC 10) | 882 | |
| British Columbia SR&ED non-refundable tax credit (from Form T666) | 659 | |
| British Columbia non-refundable tax credits (total of lines 650, 651, 683, 656, and 659) | | 8B |
| Total British Columbia tax payable before refundable tax credits (amount 8A minus amount 8B) (if negative, enter "0") | | 8C |
| British Columbia qualifying environmental trust tax credit | 670 | |
| British Columbia film and television tax credit (from Form T1196) | 671 | |
| British Columbia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 (from Form T1197) | 672 | |
| British Columbia mining exploration tax credit (from Schedule 421) | 673 | |
| British Columbia SR&ED refundable tax credit (from Form T666) | 674 | |
| British Columbia book publishing tax credit (amount on line 886 multiplied by 90%) | 665 | |
| Base amount of Publishing Support contributions received in the tax year | 886 | |
| British Columbia training tax credit (from Schedule 428) | 679 | |
| British Columbia interactive digital media tax credit (from Schedule 429) | 680 | |
| British Columbia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industry tax credit (from Schedule 430) | 681 | |
| British Columbia clean buildings tax credit | 685 | |
| Certificate number | 884 | |
| British Columbia refundable tax credits (total of lines 670 to 685, plus line 665) | | 8D |
| Net British Columbia tax payable or refundable tax credit (amount 8C minus amount 8D) | 244 | |

(if a credit, enter amount in brackets). Include this amount on line 255 on page 8.

자료: Government of Canada, "Tax Calculation Supplementary - Corporations (2023 and later tax years),"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t2sch5/t2sch5-12-23e.pdf>, 검색일자: 2024. 10. 15.

3. 일본

- 일본에는 임금 인상이나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급여와 같은 고용자 지급액의 전년 대비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임금 인상 촉진세제'가 존재함
 - 전 기업용, 중견기업용, 중소기업용의 3가지 종류의 임금 인상 촉진세제가 존재하며,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병용은 불가함
 -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사업연도 종료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세제를 적용 받는 해의 12월 31일의 기업 규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세제가 달라짐
 - 또한 대상이 되는 기간 내에 새롭게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인 개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가. 임금 인상 촉진세제의 유형별 적용 대상 및 공제율

1) 전 기업 대상 임금 인상 촉진세제(全企業向け賃上げ促進税制)⁴⁹⁾

- 청색신고서⁵⁰⁾를 제출하는 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음
 - 법인의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각 연도에 대해 적용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침⁵¹⁾의 공표 및 그 취지의 신고가 요구됨⁵²⁾

49) 経済産業省, 「賃上げ促進税制」御利用ガイドブック, 2024. 8. 5., p. 2,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syotokukakudaisokushin/r6_chinagesokushinzeisei/r6chinagesokushinzeisei_gb_20241016.pdf, 검색일자: 2024. 10. 15.

50) 일본에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각종 세법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청색 신고와 수입과 지출 내역만을 작성하나 세법상 우대 조치는 없는 백색 신고의 두 가지 신고 방식이 존재함

5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단체 또는 양자 간 해결이 어려운 과제 해결을 위하여, 3자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참가 및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통해 합의 형성 등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프로세스(「マルチステークホルダー・プロセスの定義と特徴」, <https://www5.cao.go.jp/npc/sustainability/concept/definition.html>, 검색일자: 2024. 10. 15.)

- 법인의 경우 본 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 종료 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0억엔 이상이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수가 2천명 이상인 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 공제가 적용되는 연도의 12월 31일에 상시 종업원 수가 2천명 이상인 사업자

- 공제율은 계속 고용자에 대한 급여 지급액의 전년 대비 증가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기타 추가 세액공제가 존재함
 - 계속 고용자에게 지급된 급여 등의 금액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3% 이상일 경우 증가분의 10%, 4% 이상은 15%, 5% 이상은 20%, 7% 이상은 25%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
 - 이에 더하여 교육훈련비의 금액이 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5%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함
 - 이때 전체 교육훈련비 액수는 적용 사업연도의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의 0.05%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육아와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쿠루민 인증이나 여성 참여 촉진 기업을 인증하는 에루보시 인증에서 플래티넘 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추가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⁵³⁾

2) 중견기업 대상 임금 인상 촉진세제(中堅企業向け賃上げ促進税制)⁵⁴⁾

- 공제 적용 연도(개인사업자) 혹은 사업연도(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지배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종업원 수까지 합하여 그 수가 1만명을 넘는 경우 또한 제외함

52) eBizID 프라임의 계정 취득 후 eBiz Form을 통한 신고가 요구되며, 게재까지 10일 정도 소요됨

53) 에루보시 인증 및 쿠루민 인증과 관련 내용은 다음의 '나. 공통 적용 사항'에서 설명함

54) 経済産業省, 「賃上げ促進税制」御利用ガイドブック, 2024. 8. 5., p. 3,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syotokukakudaisokushin/r6_chinagesokushinzeisei/r6chinagesokushinzeisei_gb_20241016.pdf, 검색일자: 2024. 10. 15.

- 전 기업 대상 임금 인상 촉진세제와 동일하게 법인의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각 연도에 대해 적용함
 - 또한 공제 적용 사업연도 종료 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0억엔 이상이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법인은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침의 공표 및 그 취지의 신고가 요구됨
- 계속 고용자에 대한 급여 지급액의 전년 대비 증가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요율로 적용되며, 교육훈련비 증가 혹은 육아 양립 및 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세액공제가 존재함
- 계속 고용자에게 지급된 급여 등의 금액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3% 이상인 경우 증가분의 10%, 4% 이상 증가한 경우 25%를 공제함
 - 교육훈련비 증가분과 관련한 추가 세액공제 역시 전 기업 대상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비 금액이 전체 고용자 지급액의 0.05% 이상이고 그 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때 5%의 요율로 적용함
 - 또한 육아 양립 및 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쿠루민 인증의 플래티넘 등급이나 에루보시 인증의 3단계 이상 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두 가지 추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더라도 그 공제액은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3) 중소기업 대상 임금 인상 촉진세제(賃上げ促進税制)⁵⁵⁾

-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며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 청색신고서를 대상으로 함⁵⁶⁾

55) 国税庁, 「No.5927-2 給与等の支給額が増加した場合の法人税額の特別控除(中小企業者等における賃上げ促進税制)」,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927-2.htm>, 검색일자: 2024. 10. 15.

56) 経済産業省, 「中小企業向け賃上げ促進税制ご利用ガイドブック(令和4年12月27日更新版)」, p. 2, <https://>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법인
 - (i) 그 발행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나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1개의 대규모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 (ii) 그 발행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나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복수의 대규모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없는 법인 중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하인 법인
 -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하인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출자조합인 상공조합 등의 협동조합
- 계속 고용자에 대한 급여 지급액의 전년 대비 증가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요율로 공제가 적용되며, 전 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공제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훈련비 증가 혹은 육아 양립 및 여성 지원 관련 추가 세액공제가 존재함
- 2018년부터 계속 고용자에게 지급된 급여 등의 금액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5% 이상인 경우 증가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을 허용해 왔음
 - 2024년 4월 1일 개정을 통해 증가율이 2.5% 이상인 경우 증가분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추가됨⁵⁷⁾
 - 교육훈련비 금액이 전체 고용자 지급액의 0.05% 이상이고 그 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을 때 임금 상승분의 5%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함
 - 모든 등급의 쿠루민 인증이나 2단계 이상의 에루보시 인증을 취득한 경우 증가분의 5%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

www.chusho.meti.go.jp/zaimu/zeisei/syotokukakudai/chinnagesokushin06gudebook.pdf,
검색일자: 2024. 10. 15.

57) 経済産業省, 「「賃上げ促進税制」パンフレット(令和6年3月時点版)」, p. 1,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syotokukakudaisokushin/r6_chinagesokushinzeisei_pamphlet.pdf,
검색일자: 2024. 10. 15.

나. 공통 적용 사항

1) 공제 대상 제외 소득 및 공제 한도액

- 고용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증가분의 계산 시 정부 등으로부터 기 지급된 혜택 등은 제외함
 - 고용 안정 조성 금액(雇用安定助成金額)⁵⁸과 같이 해당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함
 - 기존에는 직원의 장학금 대출은 기업이 이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만 고용자 급여 등의 지급액으로 인정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기업이 이를 대리 상환하는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음⁵⁹
 - 해당 사업연도에 앞선 항목에서 「지방 활력 향상 지역 등에 있어서 고용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액의 특별공제 제도」(조치 42의12(措法42の12))의 적용도 함께 받는 경우, 이 공제를 적용받은 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제외한 후 계산함
- 또한 추가 공제 적용 시에도 전체 세액공제 한도액은 해당 적용 연도의 조정 전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액의 20%까지임⁶⁰⁶¹⁶²
 - 다만 중소기업 대상 임금 인상 촉진 세액공제에 한해 그 초과분에 대해 5년간의 이월이 인정됨

58)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급되는 조성금, 또는 기타 이것과 유사한 것의 금액

59) 中小企業庁, 「中小企業向け「賃上げ促進税制」」, <https://www.chusho.meti.go.jp/zaimu/zeisei/syotokukakudai.html>, 검색일자: 2024. 10. 23.

60) 経済産業省, 「「賃上げ促進税制」御利用ガイドブック」, 2024. 8. 5., p. 2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syotokukakudaisokushin/r6_chinagesokushinzeisei/r6chinagesokushinzeisei_gb_20241016.pdf, 검색일자: 2024. 10. 15.

61) 経済産業省, 「「賃上げ促進税制」御利用ガイドブック」, 2024. 8. 5., p. 3,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syotokukakudaisokushin/r6_chinagesokushinzeisei/r6chinagesokushinzeisei_gb_20241016.pdf, 검색일자: 2024. 10. 15.

62) 国税庁, 「No.5927-2 給与等の支給額が増加した場合の法人税額の特別控除(中小企業者等における賃上げ促進税制)」,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927-2.htm>, 검색일자: 2024. 10. 15.

2) 추가 세액공제 관련: 에루보시 인증, 쿠루민 인증

- 추가 세액공제 적용 기준 중 하나인 ‘에루보시 인증(えるぼし認定)’은 후생노동부가 주관하는 여성의 기업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임⁶³⁾
 - 2015년 10년 한시법으로 시작된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약칭「여성활약추진법」)에 기반하고 있음⁶⁴⁾
 - 상시고용인 101명 이상의 사업주는 여성의 활약에 관한 행동계획의 책정 의무가 주어지며, 이 중 대처의 실시 상황이 우량한 경우 신청에 의해 후생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에루보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상시고용인 301인 이상의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 생활을 위한 기회 제공 실적과 직업 및 가정 생활 양립을 위한 고용 환경 정비에 관한 실적,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 평가 항목을 만족하는 항목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3단계의 마크를 획득할 수 있으며, 관련 마크를 상품이나 광고, 명함, 구인표 등에 사용할 수 있음⁶⁵⁾
 - 평가 항목은 여성 근로자의 채용, 계속 취업,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비율의 세 가지임

63) 유혜인, 「일본 여성활약추진법의 시행 현황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10. p. 347.

64) 厚生労働省, “女性活躍推進法特集ページ(えるぼし認定・プラチナえるぼし認定),”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91025.html>, 검색일자: 2024. 10. 15.

65) 厚生労働省, “【報道発表資料】女性活躍推進法認定マークの愛称を決定しました,” 2016. 2. 29., <https://www.mhlw.go.jp/stf/houdou/0000114100.html>, 검색일자: 2024. 10. 15.

[그림 III-8] 일본 여성 참여 촉진 기업 관련 ‘에루보시’ 인증 마크



자료: 厚生労働省, 「女性活躍推進法特集ページえるぼし認定・プラチナえるぼし認定」,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91025.html>, 검색일자: 2024. 10. 15.

- 에루보시 인증 외에도 추가 세액공제를 위해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次世代育成支援対策推進法)」에 근거한 ‘쿠루민 인증(くるみん認定)’이 활용되고 있음⁶⁶⁾⁶⁷⁾
 - 상시 고용자 수 101명 이상의 기업은 노동자의 일과 육아에 관한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그 취지를 도도부현 노동국에 신고 의무가 있음
 - 행동계획에 정한 목표를 달성한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신청을 통해 후생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쿠루민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상시 고용자 수 100명 이하의 기업은 노력 의무가 존재함
 - 쿠루민 인증을 받은 기업이 보다 높은 수준의 대처를 실시해 일정의 기준을 만족하면 보다 상위의 쿠루민 인증이 부여됨
 - 일반 쿠루민 인증의 상위 단계로 플래티넘 쿠루민과 트라이 쿠루민이 존재하며, 아래 그림에서 왼쪽부터 쿠루민, 플래티넘 쿠루민, 트라이 쿠루민의 인증 마크임

66) 厚生労働省, 「次世代育成支援対策推進法」, https://www.mhlw.go.jp/stf/newpage_11367.html, 검색일자: 2024. 10. 15.

67) 厚生労働省, 「くるみんマーク・プラチなくるみんマーク・トライくるみんマーク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shokuba_kosodate/kurumin/index.html, 검색일자: 2024. 10. 15.

[그림 III-9] 일본 육아 양립 지원 기업 관련 '쿠루민' 인증 마크



자료: 厚生労働省, 「くるみんマーク・プラチナくるみんマーク・トライくるみんマーク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shokuba_kosodate/kurumin/index.html, 검색일자: 2024. 10. 15.

3) 신고서 양식

- 2024년 현재 신고서 양식은 중소기업 임금 인상 촉진세제 신고 시 사용하는 '일본의 급여 등의 지급액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액 특별공제에 관한 명세서'만 확인할 수 있음
 - 전 기업 및 중견기업 임금 인상 촉진세제는 2024 과세연도부터 도입된 신규 세제이므로, 2025년 신고부터 신청이 가능함
 - 명세서는 관련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표로 처리하여 본 명세서와 함께 첨부함
 - 육아 양립 및 여성 지원과 관련한 '에루보시' 인증 및 '쿠루민' 인증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또한 2024년 개정안부터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현 명세서에는 교육훈련비 증가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내용만 반영되어 있음

[그림 III-10] 일본의 급여 등의 지급액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액 특별공제에 관한 명세서

| 給与等の支給額が増加した場合の法人税額の特別控除に関する明細書 | | 事業年度 | : | : | 法人名 | | |
|--|----|------|---|--|-----|---|--|
| 期末現在の資本金の額又は出資金の額 | 1 | 円 | | | | | |
| 期末現在の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 | 2 | 人 | 適用可否 | | 3 | | |
| 法人税額の特別控除額の計算 | | | | | | | |
| 雇用者給与等支給額 (別表六(三十一)付表一「4」) | 4 | 円 | 控除対象雇用者給与等支給増加額 (6)と(10)のうち少ない金額 | | 19 | 円 | |
| 比較雇用者給与等支給額 (別表六(三十一)付表一「11」) | 5 | | 雇用者給与等支給増加重複控除額 (別表六(三十一)付表二「12」) | | 20 | | |
| 雇用者給与等支給増加額 (4) - (5) (マイナスの場合は0) | 6 | | 差引控除対象雇用者給与等支給増加額 (19) - (20) (マイナスの場合は0) | | 21 | | |
| 雇用者給与等支給増加割合 $\frac{(6)}{(5)}$ (5) = 0の場合は0 | 7 | | 税額控除限度額又は中小企業者等税額控除限度額の計算 | 第1項適用の場合 (14) \geq 4% の場合 0.1 | 22 | | |
| 調整雇用者給与等支給額 (別表六(三十一)付表一「5」) | 8 | 円 | | (18) \geq 20% 又は (15) = (17) > 0 の場合 0.05 | 23 | | |
| 調整比較雇用者給与等支給額 (別表六(三十一)付表一「12」) | 9 | | 第2項適用の場合 | 税額控除限度額 (21) \times (0.15 + (22) + (23)) (14) < 0.03 の場合は0 | 24 | 円 | |
| 調整雇用者給与等支給増加額 (8) - (9) (マイナスの場合は0) | 10 | | | (7) \geq 2.5% の場合 0.15 | 25 | | |
| 継続雇用者給与等支給額 (別表六(三十一)付表一「19の①」) | 11 | | 第2項適用の場合 | (18) \geq 10% 又は (15) = (17) > 0 の場合 0.1 | 26 | | |
| 継続雇用者比較給与等支給額 (別表六(三十一)付表一「19の②」又は「19の③」) | 12 | | | 中小企業者等税額控除限度額 (21) \times (0.15 + (25) + (26)) (7) < 0.015 の場合は0 | 27 | 円 | |
| 継続雇用者給与等支給増加額 (11) - (12) (マイナスの場合は0) | 13 | | | | | | |
| 継続雇用者給与等支給増加割合の計算 $\frac{(13)}{(12)}$ (12) = 0 の場合は0 | 14 | | 調整前法人税額 (別表一「2」又は別表一の三「2」若しくは「14」) | | 28 | | |
| 教育訓練費の額 | 15 | 円 | 当期税額基準額 $(28) \times \frac{20}{100}$ | | 29 | | |
| 比較教育訓練費の額 (別表六(三十一)付表一「24」) | 16 | | 当期税額控除可能額 (24) 又は (27) と (29) のうち少ない金額 | | 30 | | |
| 教育訓練費増加額 (15) - (16) (マイナスの場合は0) | 17 | | 調整前法人税額超過構成額 (別表六(六)「8の②」) | | 31 | | |
| 教育訓練費増加割合の計算 $\frac{(17)}{(16)}$ (16) = 0 の場合は0 | 18 | | 法人税額の特別控除額 (30) - (31) | | 32 | | |

別表六(三十一) 令四・四・一以後終了事業年度分

[그림 III-10]의 계속

| 급여 등의 지급액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액 특별공제에 관한 명세서 | | 사업 연도 | 법인명 | | | |
|---|---|--|--|--|----|----|
| 회기말 현재 자본금 및 출자금 금액 | 1 | 적용 가능 여부 | | 3 | | |
| 회기말 현재 상시 사용 직원 | 2 | | | | | |
|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 (별표6(31)부표1 「4」) | 4 | 공제대상 고용자급여 등 지급 증가액 (6)과 (10) 중 적은 금액 | | 19 | | |
| 비교 고용자급여 등 지급액 (별표6(31)부표1 「11」) | 5 | 고용자 급여 등 지급 증가 중복 공제액 (별표6(31)부표1 「12」) | | 20 | | |
| 고용자 급여 등 지급 증가액 (4)-(5) (마이너스일 경우 0) | 6 | 차감 공제대상 고용자급여 등 지급 증가액 (19)-(20) (마이너스일 경우 0) | | 21 | | |
| 고용자 급여 등 지급 증가율 (6)/(5) ((5)=0일 경우 0) | 7 |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 제 1 항 적용 의 경우 | (14) ≥ 4%일 경우 0.1 | 22 | |
| 조정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 (별표6(31)부표1 「5」) | 8 | | (18) ≥ 20% 또는 (15)=(17) > 0인 경우 0.05 | 23 | | |
| | 조정고용자 비교 급여 등 지급액 (별표6(31)부표1 「12」) | | 9 | 세액공제 한도액 (1)×(0.15+(22)+(23)) ((14)<0.03의 경우는 0) | 24 | |
| | 조정고용자 급여 등 지급 증가액 (8)-(9) (마이너스일 경우 0) | | 10 | (7) ≥ 2.5%의 경우 0.15 | 25 | |
| 계속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 (별표6(31)부표1 「19①」) | 11 | | (18) ≥ 10% 또는 (15)=(17) > 0인 경우 0.1 | 26 | | |
| | 계속비교 고용자급여 등 지급액 (별표6(31)부표1 「19②,③」) | | 12 | 중소기업자 등 세액공제 한도액 (21)×(0.15+(25)+(26)) ((7)<0.015인 경우 0) | 27 | |
| | 계속고용자 급여 등 지급 증가액 (11)-(12) (마이너스일 경우 0) | | 23 | | | |
| 계속 고용자급여 등 지급 증가율 (13)/(12) ((12)=0일 경우 0) | 14 | | 조정 법인세액 (별표 1 「2」, 별표 1의 3 「2」, 「14」) | | 28 | |
| 계속고용자 급여 등 지급 증가율 계산 | 교육 훈련비 금액 | | 15 | 당기 세액 기준액 (28) × 20/100 | | 29 |
| | 비교 교육 훈련비 금액 (별표6(31)부표1 「24」) | | 16 | 당기 세액공제 가능액 ((24) 또는 (27))과 (29)중 적은 금액 | | 30 |
| | 교육 훈련비 증가액 (15)-(16) (마이너스일 경우 0) | 17 | 조정 전 법인세액 초과 구성액 (별표6(6) 「8②」) | | 31 | |
| | 교육 훈련비 증가율 (17)/(16) ((16)=0일 경우 0) | 18 | 법인세액 특별공제액 (30)-(31) | | 32 | |

자료: 国税庁, 「別表六(三十一)を使用するに当たっての注意点(中小企業向け賃上げ促進税制の適用に当たっての注意点)」,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hojin/shinkoku/itiran2022/pdf/06\(31\).pdf](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hojin/shinkoku/itiran2022/pdf/06(31).pdf), 검색일자: 2024. 10. 15.

다. 유형별 임금 인상 촉진세제 비교

- 앞에서 살펴본 전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 임금 인상 촉진세제의 공제율과 특이 사항 등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임금 인상 시 공제율은 전 기업 대상의 공제가 가장 세분화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 보다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됨
- 추가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교육훈련비 증가율과 예루보시 및 쿠루민 인증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있음

〈표 Ⅲ-3〉 임금 인상 촉진세제 유형별 공제율 등

| 분류 | 임금 인상 시 인상분의 공제율 | 추가 세액공제 | | | 기타 |
|------------|--|-----------------|---------------|--------------|---|
| | | 교육훈련비 증가시 5% | 예루보시 인증 5% | 쿠루민 인증 5% | |
| 전 기업 대상 | 3% 이상 인상 시 10% 4% 이상 인상 시 15% 5% 이상 인상 시 20% 7% 이상 인상 시 25% | 10% 증가 시 | 2단계 이상 | 플래티넘 이상 | 일정기준 이상의 기업은 멀티스테이크홀더 관련 공표 및 신고 필요 |
| 중견기업 대상 | 3% 이상 인상 시 10% 4% 이상 인상 시 25% | 10% 증가 시 | 3단계 이상 | 플래티넘 이상 | 일정기준 이상의 기업은 멀티스테이크홀더 관련 공표 및 신고 필요 |
| 중소기업 대상 | 1.5% 이상 인상 시 15% 2.5% 이상 인상 시 30% | 5% 증가 시 | 2단계 이상 | 모든 등급 | 공제한도 초과분 5년간 이월 허용 |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

4. 소결

- 미국과 캐나다, 일본 모두 적격자 검토 시 국세청 내부 자원이 아닌 별도의 외부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며, 이는 자격 검증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 서류나 사후 관리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근로기회 세액공제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사전 심사 인증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세액공제 신청이 허용됨
 - 캐나다나 일본처럼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던 타 기관의 인증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회 세액공제 대상자의 입증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인증임
- 캐나다는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확인 시 견습 약정과 관련한 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하여, 국세청이 공제 대상 적격자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역시 BC주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관련 과정생들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함에 있어, 대상자 검증을 등록번호 제출로 대체함
- 일본은 ‘임금 인상 촉진세제 운영’ 시 여성 참여 및 육아 양립 등과 관련 요소를 결합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한 적격자 입증을 위해 외부 인증 제도를 활용함
 -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사업체들 중 후생노동성의 ‘에루보시’ 인증 및 ‘쿠루민’ 인증의 일정 단계 이상을 취득하는 기업에 각 인증에 대해 5%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함
- 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서와 관련 공제액이 기재된 양식과 별도의 명세서를 함께 첨부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는 점은 3개 국가가 동일하나, 양식의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함
- 미국과 캐나다는 유사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각 항목의 계산 과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어 긴 서식의 형태를 취함

- 서식 내에서 거의 모든 계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각 요소들에 대한 해설까지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형식의 신고서 및 명세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명세서에는 주요 요소들을 집약적인 표로 제시하고 있어 간결한 형식을 취함
 - 명세서 내 항목의 세부 사항들은 별도의 양식으로 부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 특례제도처럼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도 한시적 특례제도가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의 총조세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2021년 기준 56.74%⁶⁸⁾로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고용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세액공제를 시도했던 흔적이 있었음
 - 그러나 대다수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들이 일몰이 가능한 특례의 형태로 운영되어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는 현재 근로기회 세액공제 정도인 것으로 확인함
 - 1977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2년간 도입되었던 '신규고용창출 세액공제(New Jobs Tax Credit)'나 2000년 1년간 도입된 '일자리 재건을 위한 고용유인제도(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직원 유지 세액공제(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등이 일몰제로 운영된 대표적인 고용 관련 세액공제 사례임
 - 변동성이 큰 세무 환경 적응에 유연하게 대응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잦은 세제 변화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 또한 존재함

68) Global Tax Expenditure Database, <https://gted.taxexpenditures.org/data-download>, 검색 일자: 2024. 10. 15.

〈표 Ⅲ-4〉 미국, 캐나다, 일본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세무행정 사항 비교

| 국가 | 신청 방식 | 요건 충족 인정 방법 | 기타 행정 사항 | |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신고 시 일반 세액공제 신청서 및 명세서 첨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부에 대상자 사전 인증 신청서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고용 관련 조세특례가 다수 존재 | |
| 캐나다 | 연방 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견습생 감독위원회의 레드씰 프로그램 등록 여부 (신청서상에 프로그램 등록 번호 기재) | - | |
| | 매니토바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신고 시 법인세 계산 보충자료와 혼련 세액공제 신청서 첨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드씰 프로그램 등록 여부 주정부 승인 프로그램 및 조합 과정 이수 여부 | - |
| | BC 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드씰 프로그램 등록 여부 BC주 기술사업부' 관리 프로그램 등록 여부 |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의 명세서와 관련 부표 첨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세액공제 관련) 후생노동성의 '에루보시' 및 '쿠루민' 인증 여부 및 그 등급 | - | |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

IV. 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1. 연구 개관

- (목적) 본 절에서는 고용분야 세액공제와 관련된 행정비용에 대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통하여 정책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응답자는 고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사무 및 행정 처리를 하는 자로 한정됨
 -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 조사 완료 기업: 대기업 53개, 중견기업 103개, 중소기업 350개
 - 본 조사에서 대기업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의미하고, 중견기업은 통상적인 중견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분류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되 5인 미만 사업체는 제외함
 - 응답자 선정: 표본으로 추출된 사업체 대표 전화번호로 접촉해 인사담당 부서의 과차장급 이상을 적격 응답자로 선정함(소기업은 부장급 이상을 선정)
 - 단,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자가 사원 또는 대리 직급밖에 없는 경우, 과차장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조사를 진행함
 - 표본추출방법: 기업체 규모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임의할당추출

-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음
 - (기업 기본사항) 소재지, 주요 업종, 기업유형,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사업연도,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임원 제외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급여, 연령대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인원, 정규직의 성별 경력기간별 인원, 평균적인 정규직 채용기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수, 만 9~12세 자녀를 둔 근로자 수, 응답자 특질, 세제지원 신청 시 업무수행자

-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채용인원, 동종업종에 종사한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대한 인식,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액공제 인지도, 관련 세액공제를 고려한 채용 여부 및 관련인원, 동종업종 요건 여부에 따른 채용인원 등
- (고용관련 세액공제 전반에 대한 의견) 개별 세액공제에 대한 인지도, 최근 5년간 세금 신고 시 경험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명확성 및 납세협력비용, 실제 기업 행태에의 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내 경력단절,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 대한 요건 확인의 용이성, 세액공제와 관련된 정보 입수 및 지원의 경로

2. 설문조사 기초통계량

- 본 설문조사는 하위 집단 분석의 유효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실제 모집단 보다 과대표집하여 이하의 분석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함⁶⁹⁾
- 표본의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이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지역, 업종, 종사자 규모의 분포와 같아지도록 설정함
 - 「전국사업체조사」의 종사자 규모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합을 기준으로 산출함

69) 오종현·김문정(2024)에서 인용함

〈표 IV-1〉 표본에 대한 가중치

(단위: 개)

| 지역 | 업종 | 종사자 규모 | 모집단 관측치 | 표본 관측치 | 가중치 |
|------|------|---------|------------|-----------|-----------|
| 수도권 | 제조업 | 5~49인 | 59,813 | 60 | 996.8833 |
| | | 50~99인 | 2,304 | 31 | 74.3226 |
| | | 100인 이상 | 1,297 | 31 | 41.8387 |
| | 비제조업 | 5~49인 | 265,247 | 80 | 3315.5875 |
| | | 50~99인 | 11,542 | 27 | 427.4815 |
| | | 100인 이상 | 7,993 | 23 | 347.5217 |
| 비수도권 | 제조업 | 5~49인 | 52,739 | 62 | 850.6290 |
| | | 50~99인 | 3,347 | 38 | 88.0789 |
| | | 100인 이상 | 2,275 | 38 | 59.8684 |
| | 비제조업 | 5~49인 | 216,440 | 85 | 2546.3529 |
| | | 50~99인 | 9,512 | 21 | 452.9524 |
| | | 100인 이상 | 4,989 | 10 | 498.9000 |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2년 기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 설문조사 자료

□ 〈표 IV-2〉는 설문조사 기업의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음

- 본 기초통계량은 기업의 가중치를 반영한 통계량임
-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비율은 54.62%로 나타남
- 업종의 경우 제조업이 19.09%, 서비스업이 15.41%, 기타 업종이 나머지(65.50%)를 차지함
- 사업규모는 5~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에 해당하는 비중이 각각 93.09%, 4.33%, 1.83%, 0.76%를 차지함
- 임원 외 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344.29만원이며, 표준편차는 75.62로 나타남
- 세액공제 신청 업무의 담당자는 세무전문가(69.35%), 일반 직원(26.90%), 기업 대표(3.75%)로 나타남
- 조사 기업의 평균적인 남성 근로자 규모는 26명, 여성 근로자 규모는 10명임
- 응답기업은 평균적으로 자산은 2,094억원, 부채는 1,119억원, 자본은 539억원, 매출액 1,371억원, 영업이익은 105억원, 당기순이익은 82억원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수치는 매출액이나 자산 등이 유독 높은 기업들이 평균값을 끌어 올린 영향이 클 수 있어 매출액이 7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해 다시 계산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자산은 831억원, 부채는 192억원, 자본은 342억원, 매출액은 266억원, 영업이익은 28억원, 당기순이익은 31억원 등으로 나타남

〈표 IV-2〉 설문조사 기초통계량1

(단위: %, 만원, 명, 억원)

| 구분 | | 관측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지역 | 수도권 | 637,203 | 54.62 | 49.79 | 0 | 100 |
| | 비수도권 | 637,203 | 45.38 | 49.79 | 0 | 100 |
| 업종 | 제조업 | 637,203 | 19.09 | 39.30 | 0 | 100 |
| | 서비스업 | 637,203 | 15.41 | 36.11 | 0 | 100 |
| | 기타 | 637,203 | 65.50 | 47.54 | 0 | 100 |
| 사업 규모 | 5~49인 | 637,203 | 93.09 | 25.37 | 0 | 100 |
| | 50~99인 | 637,203 | 4.33 | 20.34 | 0 | 100 |
| | 100~299인 | 637,203 | 1.83 | 13.39 | 0 | 100 |
| | 300명 이상 | 637,203 | 0.76 | 8.68 | 0 | 100 |
| 임금 | 직원 임금(만원) | 637,203 | 344.29 | 75.62 | 198 | 780 |
| 세액 공제 신청자 | 기업대표 | 637,203 | 3.75 | 19.00 | 0 | 100 |
| | 세무전문가 | 637,203 | 69.35 | 46.11 | 0 | 100 |
| | 일반직원 | 637,203 | 26.90 | 44.35 | 0 | 100 |
| 성별 근로자 규모 | 남성 근로자(명) | 637,203 | 26.07 | 155.46 | 1 | 4,200 |
| | 여성 근로자(명) | 637,203 | 10.04 | 66.70 | 0 | 2,320 |
| 기업 재무 상황 | 자산(억원) | 637,203 | 2,094 | 22,654 | 0 | 799,066 |
| | 부채(억원) | 637,203 | 1,119 | 17,990 | 0 | 720,393 |
| | 자본(억원) | 637,203 | 539 | 3,053 | 0 | 96,420 |
| | 매출액(억원) | 637,203 | 1,371 | 19,708 | 2 | 774,827 |
| | 영업이익(억원) | 637,203 | 105 | 1,672 | -2,645 | 64,353 |
| | 당기순이익(억원) | 637,203 | 82 | 1,148 | -3,187 | 40,634 |
| 기업 재무 상황 (매출액 < 7천억) | 자산(억원) | 11,382 | 831 | 6,644 | 0 | 220,228 |
| | 부채(억원) | 11,382 | 192 | 771 | 0 | 12,300 |
| | 자본(억원) | 11,382 | 342 | 2,003 | 0 | 39,987 |
| | 매출액(억원) | 11,382 | 266 | 778 | 2 | 6,860 |
| | 영업이익(억원) | 11,382 | 28 | 272 | -2,390 | 3,357 |
| | 당기순이익(억원) | 11,382 | 31 | 284 | -1,623 | 3,598 |

주: 가중치가 적용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기반으로 저자 작성

□ <표 IV-3>은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음

- 응답자는 관리부서(44.72%) 소속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사부서(25.45%), 경영부서(16.64%), 총무부서(6.37%), 총괄부서(4.41%), 재무부서(1.71%)로 나타남
- 응답자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는 평균 8.72년, 전체 직장 경력은 12.64년으로 나타남
- 세액공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1에서 5 사이의 값으로 응답(수치가 올라갈수록 이해도 증진된다고 가정함)하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해도 수준은 3.52로 나타남

<표 IV-3> 설문조사 기초통계량2

(단위: 개, %)

| 구분 | | 관측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소속부서 | 경영 부서 | 637,203 | 16.64 | 37.25 | 0 | 100 |
| | 관리 부서 | 637,203 | 44.72 | 49.72 | 0 | 100 |
| | 인사 부서 | 637,203 | 25.45 | 43.56 | 0 | 100 |
| | 총무 부서 | 637,203 | 6.37 | 24.42 | 0 | 100 |
| | 총괄 부서 | 637,203 | 4.41 | 20.54 | 0 | 100 |
| | 재무 부서 | 637,203 | 1.71 | 12.97 | 0 | 100 |
| | 기타(기획, 영업부, CS) | 637,203 | 0.69 | 8.28 | 0 | 100 |
| 경력 | 현재 직장 경력(년) | 637,203 | 8.72 | 5.85 | 1 | 44 |
| | 전체 직장 경력(년) | 637,203 | 12.64 | 7.03 | 1 | 45 |
| 세액공제 이해수준(1→5) | | 637,203 | 3.52 | 0.79 | 2 | 5 |

주: 가중치가 적용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기반으로 저자 작성

3. 설문조사 자료 분석

- (납세협력비용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례에 대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AdmCost^1$ 라고 할 때, 다음의 문항에서 “전혀 명확하지 않다” 혹은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AdmCost^1$ 의 값이 단순하게 1씩 증가한다고 가정함(최대 8개 항목)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용어의 명확성
 - ① ‘평균임금’ 용어의 명확성
 - ② ‘상시근로자’ 용어의 명확성
 - ③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용어의 명확성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빙작업의 용이성
 - ④ 세액공제 신청 시 ‘평균임금’ 증빙의 용이성
 - ⑤ 세액공제 신청 시 ‘상시근로자’ 증빙의 용이성
 - ⑥ 세액공제 신청 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증빙의 용이성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의 이해 가능성
 - ⑦ 자격증 미소지 일반 기업의 실무자가 해당 세액공제 내용을 이해할 가능성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요건의 이해 가능성
 - ⑧ 기업이 해당 세액공제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판단 가능성
- (납세협력비용2)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를 정의할 때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AdmCost^2$ 라고 할 때, 다음의 문항에서 “전혀 명확하지 않다” 혹은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AdmCost^2$ 의 값이 단순하게 1씩 증가한다고 가정함(최대 7개 항목)
- 경력단절 여성 요건 판단을 위한 서류 준비의 용이성
 - ① “동종 업종에서의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②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④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가 아닐 것”
- 육아휴직 복귀자 요건 판단을 위한 서류 준비의 용이성
 - 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⑥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⑦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가 아닐 것”
- 아래의 본문에서 납세협력비용1, 2는 계산된 방식 그대로 제시하거나,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변환한 값을 제시하기도 했음
 - 변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납세협력비용1의 값에 8을 나눈 후 100을 곱하고, 납세협력비용2의 경우에는 7을 나눈 후 100을 곱하였는데, 일종의 표준화 과정을 거친 것이라 할 수 있음
 - 납세협력비용의 지표의 수준(level)이 상이하여 초기 산출방식하에서는 해당 지표 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표 IV-4>, <표 IV-5>에는 납세협력비용1, 2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납세협력비용1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58.86%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전술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 그다음으로 납세협력비용1의 값이 1인 경우가 12.77%, 2인 경우는 13.89%로 나타났는데, 이는 1개 혹은 2개의 항목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집단이 각각 12.77%, 13.89%임을 의미함
 - 납세협력비용2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54.55%로 나타남
 - 1개 혹은 2개의 항목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집단이 각각 12.40%, 14.50%임을 의미함
 - 납세협력비용1과 납세협력비용2를 표준변환을 하면, 각각 기업 평균값은 11.80, 16.14로 나타나 경력단절/육아휴직 복귀자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IV-4〉 납세협력비용1(근로소득공제 관련)

(단위: 개, %)

| | 납세협력비용1(변환전) | 빈도 | 비중 |
|-------|--------------|---------|-------|
| 변환전통계 | 0 | 375,062 | 58.86 |
| | 1 | 81,343 | 12.77 |
| | 2 | 88,506 | 13.89 |
| | 3 | 52,043 | 8.17 |
| | 4 | 24,214 | 3.8 |
| | 5 | 9,264 | 1.45 |
| | 6 | 3,456 | 0.54 |
| | 7 | 3,315 | 0.52 |
| 변환후통계 | 평균 | 11.80 | |
| | (표준편차) | 17.45 | |
| 전체 | | 637,203 | |

주: 1. 가중치가 적용된 통계량임

2. '변환'이란 변환전 납세협력비용 지표를 최댓값이 100이 되도록 전환했음을 의미함
(변환전 납세협력비용 지표는 최대 8개 항목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5〉 납세협력비용2(경력단절/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단위: 개, %)

| | 납세협력비용2(변환전) | 빈도 | 비중 |
|-------|--------------|---------|-------|
| 변환전통계 | 0 | 347,600 | 54.55 |
| | 1 | 79,007 | 12.4 |
| | 2 | 92,421 | 14.5 |
| | 3 | 59,427 | 9.33 |
| | 4 | 35,924 | 5.64 |
| | 5 | 8,981 | 1.41 |
| | 6 | 7,832 | 1.23 |
| | 7 | 6,011 | 0.94 |
| 변환후통계 | 평균 | 16.14 | |
| | (표준편차) | 22.25 | |
| 전체 | | 637,20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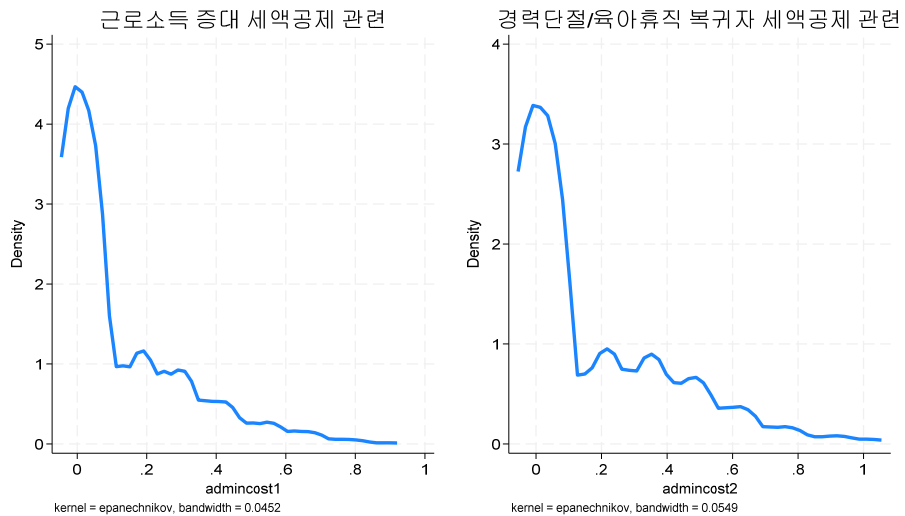
주: 1. 가중치가 적용된 통계량임

2. '변환'이란 변환전 납세협력비용 지표를 최댓값이 100이 되도록 전환했음을 의미함
(변환전 납세협력비용 지표는 최대 7개 항목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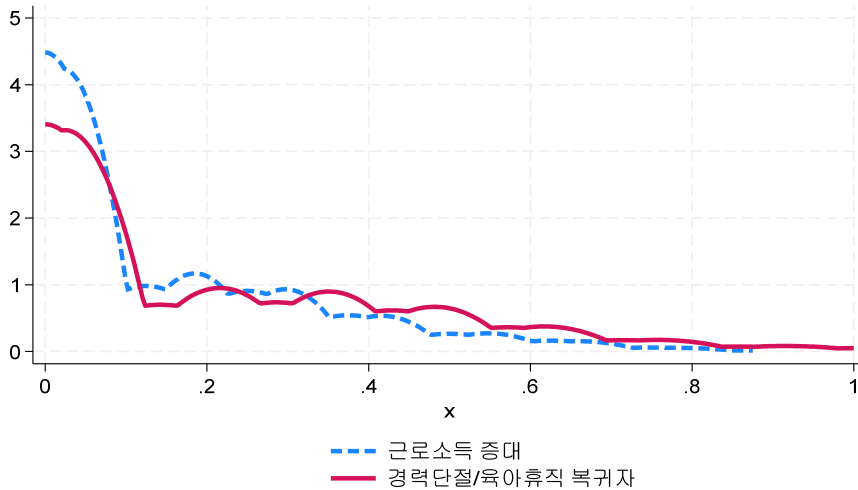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V-1] 납세협력비용 지표의 확률분포

(1) 납세협력비용1(근로소득 증대)과 납세협력비용2(경력단절/육아휴직 복귀자)



(2) 전체 그래프



- 주: 1. “변환된 수치”를 활용함. ‘변환’이란 변환전 납세협력비용 지표를 최댓값이 100이 되도록 전환했음을 의미함 (변환전 납세협력비용 지표는 최대 7개 혹은 8개인 것을 고려하면 초기에 계산된 값에 7 혹은 9을 나눈 후 100을 곱하였음)
2.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음. 적용하더라도 유사한 패턴을 따르는 것을 확인함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6〉 납세협력비용1과 납세협력비용2 간의 상관성

(단위: %)

| | 구분 | | 납세협력비용2(경력단절/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 | | | |
|-------------------------------|------------------|-------|---------------------------|-----------------|------------------|-------------|-------|
| | | 비중 기준 | $x = 0$ | $0 < x \leq 20$ | $20 \leq x < 30$ | $x \geq 30$ | 전체 |
| 납세 협력비용1 (근로소득 증대관련) | $x = 0$ | R | 80.95 | 8.51 | 7.37 | 3.17 | 100 |
| | | C | 87.35 | 40.4 | 29.91 | 10.05 | 58.86 |
| | $0 < x \leq 20$ | R | 24.86 | 22.08 | 27.44 | 25.62 | 100 |
| | | C | 5.82 | 22.73 | 24.15 | 17.63 | 12.77 |
| | $20 \leq x < 30$ | R | 19.33 | 10.68 | 28.48 | 41.51 | 100 |
| | | C | 4.92 | 11.96 | 27.27 | 31.09 | 13.89 |
| | $x \geq 30$ | R | 7.2 | 21.32 | 18.7 | 52.78 | 100 |
| | | C | 1.91 | 24.9 | 18.67 | 41.22 | 14.48 |
| | 전체 | R | 54.55 | 12.4 | 14.5 | 18.55 | 100 |
| | | C | 100 | 100 | 100 | 100 | 100 |

주: 1. 가중치가 적용된 통계량임

2. 100으로 변환된 통계량임

‘변환’이란 변환전 납세협력비용 지표를 최댓값이 100이 되도록 전환했음을 의미함

(변환전 납세협력비용 지표는 최대 7개 혹은 8개 항목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표 IV-6〉에서는 납세협력비용1과 납세협력비용2라는 두 지표가 대체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납세협력비용1의 값이 “0”인 기업 중의 80.95%가 납세협력비용2의 값 역시 “0”의 값을 지님

○ 납세협력비용2의 값이 30% 이상인 기업들은 대체로 납세협력비용1의 수준도 높게 나타남

- 납세협력비용2의 값이 20% 이상~30% 미만, 30% 이상에 해당할 경우는 31.09%, 41.22%로 나타남

- <표 IV-7>에서는 표준화된 납세협력비용1과 납세협력비용2의 값을 합산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두 지표에서 동시에 0의 값을 갖는 경우는 전체 중에서 47.65%이며, 53% 미만인 경우는 26.00%, 그 이상으로 높은 비용을 나타내는 경우는 26.35%에 해당함

〈표 IV-7〉 납세협력비용 합산수치 통계량

(단위: 개, %)

| 구분 | 빈도 | 비중 |
|--------------|---------|-------|
| $x = 0$ | 303,628 | 47.65 |
| $0 < x < 53$ | 165,701 | 26.00 |
| ≥ 53 | 167,874 | 26.35 |
| 전체 | 637,203 | 100 |

- 주: 1. 가중치가 적용된 통계량임
 2. 100으로 변환된 통계량이며, 전술한 납세협력비용1, 납세협력비용2을 합한 값임
 '변환'이란 변환전 납세협력비용 지표를 최댓값이 100이 되도록 전환했음을 의미함
 (변환전 납세협력비용 지표는 최대 7개 혹은 8개 항목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음)
 3. '53'은 75분위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다음으로 [그림 IV-2]~[그림 IV-3]에서는 기업의 특성별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를 집단별로 비교하고 있음
 - 각 그래프에서 납세협력비용은 '합산지수'(납세협력비용1+납세협력비용2)로 계산되어 있으며 해당 값이 막대그래프 안에 표시되어 있음
 -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모든 그래프는 가중치가 적용된 통계량에 기반하여 작성됨
 -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는 26.44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29.74)보다 더 낮게 나타남([그림 IV-2] 참조)
 - [그림 IV-3]의 왼쪽 패널에서는 산업, 근로자 규모, 세액공제 신청자 유형, 응답자 소속 부서 유형별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를 비교하고 있음
 - 산업의 경우, 순서대로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순으로 제시됨
 - 근로자 규모의 경우, 순서대로 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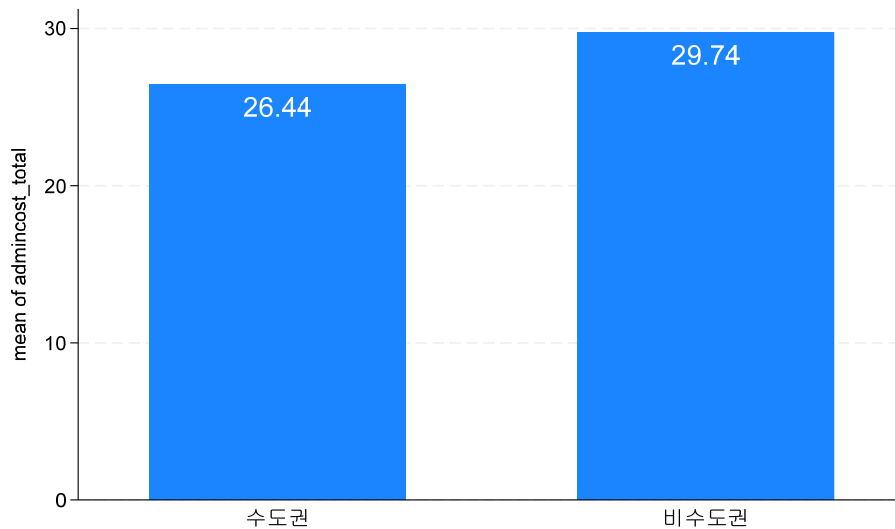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순으로 제시됨

- 세액공제 신청자의 경우, 기업 대표, 세무대리인, 일반 직원 순임
- 응답자 소속 부서의 경우, 경영, 관리, 인사, 총무, 총괄, 회계, 기타 순임

○ [그림 IV-3]의 오른쪽 패널에서는 전술한 기업의 특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구분하여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를 비교하고 있음

[그림 IV-2] 기업의 소재지별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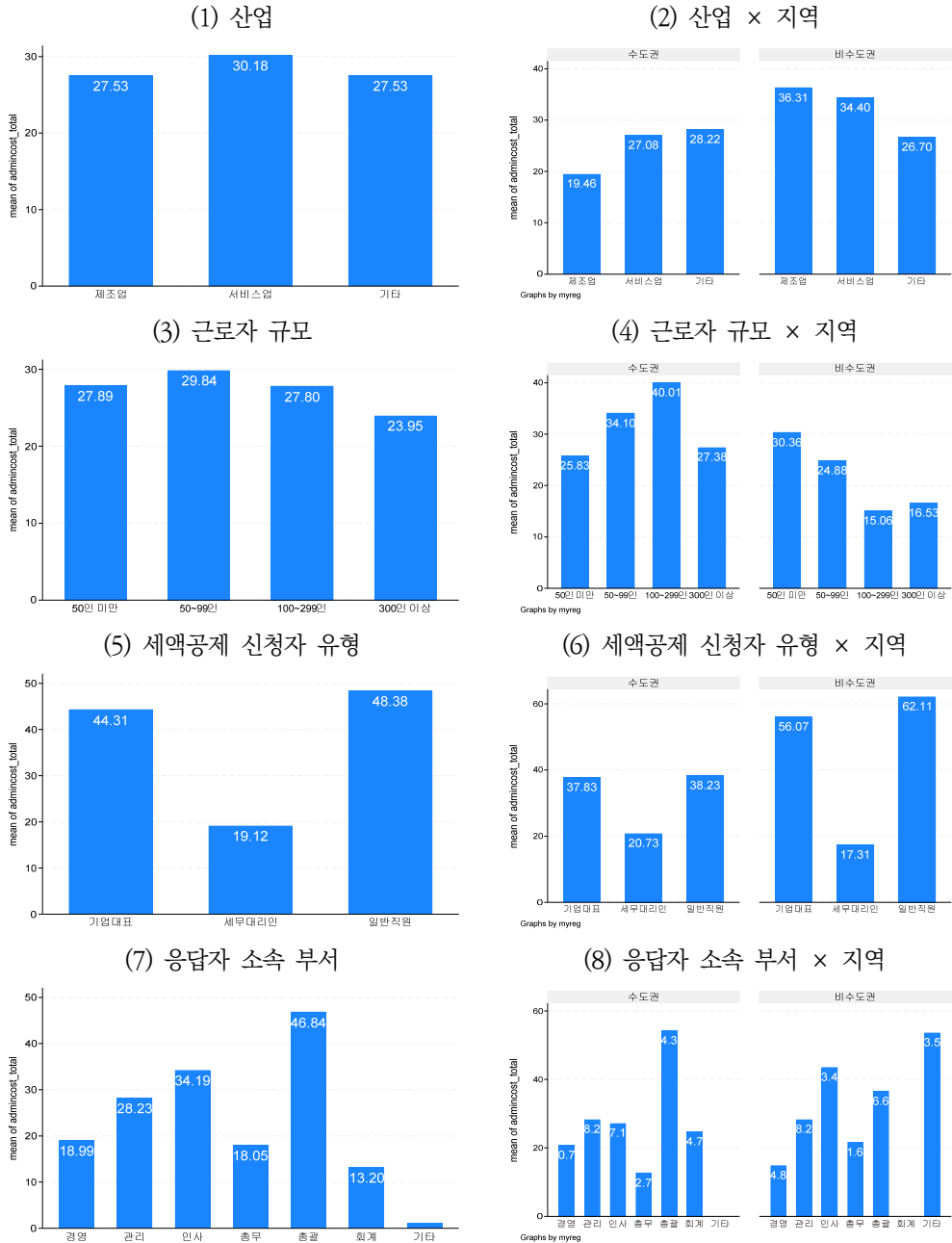


주: 가중치가 적용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V-3] 기업의 특성별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지역별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그림 IV-3]의 왼쪽 패널을 통해 다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산업별: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과 기타산업은 거의 유사하되, 업종 간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
 - 근로자 규모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세액공제 신청자 유형별로는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고, 일반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소속 부서의 경우, '총무'나 '회계'팀 소속인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고, '총괄'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남
 - 세액공제 신청자 유형과 응답자 소속 부서를 고려했을 때, 응답자가 회계 혹은 총무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세무전문지식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세액공제 신청을 직접 수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지역별 구분을 고려한 [그림 IV-3]의 오른쪽 패널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평균적인 패턴이 지역별로 적지 않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산업과 지역([그림 IV-3](2)): 수도권인 경우 제조업<서비스업<일반업종 순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높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일반업종 순으로 순위와 정반대로 나타남
 - 근로자 규모와 지역([그림 IV-3](4)): 수도권의 경우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의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에서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규모가 커지는 처음 3개 그래프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사업장에서는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세액공제 신청자 유형과 지역([그림 IV-3](6)): 세무대리인의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납세협력비용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기타 유형(기업 대표 혹은 일반 직원)의 경우 비수도권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소속 부서와 지역([그림 IV-3](8)): 응답자 부서별로 패턴이 수도권과 비수

- 다음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실질적으로 세액공제의 효과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
 - 만약 본고에서 정의한 납세협력비용1, 2의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 등이 세액공제 신청상의 행정상 부담을 제대로 포착한다면, 이러한 지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세액공제 제도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낮게 예측될 것임
 - 본고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기업 응답자는, 다른 기업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한다고 예측할 수 있고, 기업 전체를 보았을 때 세액공제의 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위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납세협력비용과 세액공제에 대한 예상되는 기업의 반응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해당 세액공제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납세협력비용이 주요인이 아닐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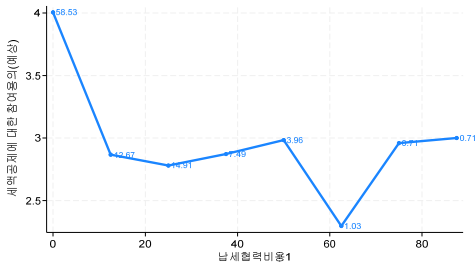
- 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예상하게 하였음
 -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서 응답자는 1(“전혀 그렇지 않다”)과 5(“매우 그렇다”) 사이의 숫자를 선택하게 됨
 - 질문1: “기업들이 본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리고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 질문2: “세액공제의 제도의 내용과 증빙서류가 간단해진다면, 기업들이 본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리고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 [그림 IV-5]에서는 납세협력비용1(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국한) 혹은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와 경력단절/육아휴직 복귀자 포함)와 질문1, 2에 대한 응답자의 예상(5 효과 높음, 1 효과 낮음) 간 상관성을 보여줌
 - 대체로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효과를 낮게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 동시에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본고의 납세협력비용 지표의 정의가 실제 납세협력비용을 제대로 포착한다면) 납세협력비용이 그 순효과를 영향 미칠 정도로 주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그림 IV-5](1)에서는 납세협력비용1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오히려 세액공제 효과를 그 전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예측하는 패턴을 보임
- 납세협력비용1보다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를 활용할 경우 우하향하는 패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남
 - 본 질문1, 2가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경력단절/육아휴직 복귀자 용어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2와 직접적으로 연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림에도 추가 질문(육아휴직 복귀자 등)을 통해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세액공제 용어의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가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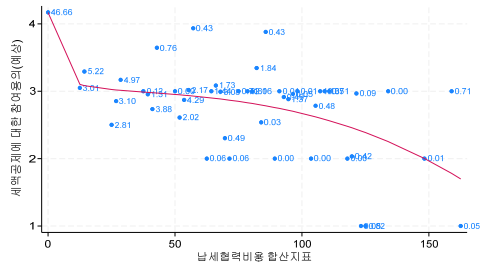
[그림 IV-5] 납세협력비용 수준과 세액공제 효과에 대한 주관적 예상

(단위: 납세협력비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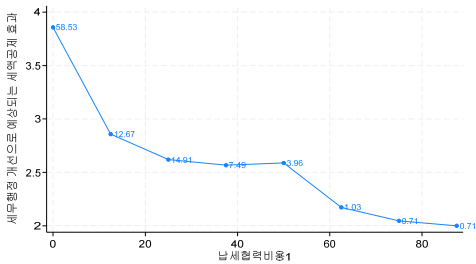
(1) 질문1과 납세협력비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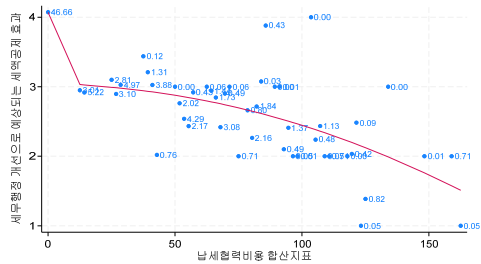
(2) 질문 1과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



(3) 질문2와 납세협력비용1



(4) 질문2와 납세협력비용 합산지수



주: 질문1: “기업들이 본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질문2: “세액공제의 제도의 내용과 증빙서류가 간단해진다면, 기업들이 본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V. 결론

1. 요약

- (문제의식) 조세지출은 과세당국의 집행부서 및 잠재적 수급자의 양측에 모두 적지 않은 행정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비용은 조세지출 제도를 통해 애초에 유도했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음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고용분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관련 해외사례 조사,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도 개관) 고용분야 조세지출 금액은 2016~2025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34.8%로 전체 분야 증가율(8.5%)의 약 4배에 해당함
 -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2018년 740억원에서 2023년 1조 8천억원으로 24배 증가하였음
 - 일반적으로 고용분야 세액공제는 세법에 기반한 사용자(신청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상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 규모를 유지해야 함(사후관리)
 - 고용분야가 국세청의 주요 집행분야가 아님에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공유받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세법상 정의되어 있는 정의에 준하여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집행하고 있음
 - 신청자(기업)는 소득세나 법인세 정기신고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행 가산세 체계하에서 경정청구를 통

한 세액공제 신청이 더 선호될 수 있음

- 정기신고 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후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임
 -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은 과세 관청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과세 관청의 행정비용이 높으면, 세액공제 신청자를 내실있게 검증하는 과세 관청의 역량에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후관리 요건은 과세 관청(검증비용)과 신청자(고용유지 및 기록관리) 모두에게 행정비용을 야기함

- (해외사례) 미국, 캐나다,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고용분야 조세지출 제도의 목적은 유사하지만 대상 포괄성, 운영방식과 발생 빈도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 (발생 빈도) 고용분야 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며,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음
 - 미국의 총조세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2021년 기준 56.74%로 OECD 회원국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지만, 대다수가 일몰되고 현재는 ‘근로기회 세액공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판단기준) 조세지출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하여 국세청 내부 자원이 아닌 별도의 외부 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음
 - 캐나다의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의 경우 적용 대상 확인 시 견습 약정과 관련한 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하여 국세청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음
- (대상 포괄성) 전술한 캐나다 사례, 혹은 미국의 ‘근로기회 세액공제’는 노동부의 사전 심사 인증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세액공제 신청이 허용됨
 - 고용분야 전문 집행기관의 제도를 조세지출로써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설문조사) 기업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고용분야 세액공제와 관련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예측해보고, 이러한 납세협력비용 지표와 기업이 예상하는 세액공제 효과와의 상관성 등을 분석함

- 세액공제에서 나타나는 용어의 명확성이나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준비의 용이성 등에 기반하여 정의함
 -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액공제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행정비용이 세액공제라는 제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납세협력비용은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여부에 따라서 기업 특질(고용규모, 응답자 소속 부서, 업종 등)에 따른 패턴이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이 두 가지 현상을 종합할 때, 세무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가 실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 세액공제에 대한 잠재적 신청자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다만, 세액공제의 복잡성을 낮추어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정책 함의) 우리나라의 고용분야 세액공제의 납세협력비용은 세액공제의 효과를 상쇄할 만큼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고용분야 세액공제의 요건 자체를 고용노동부의 재정정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기반하여 재작성하는 방안
 - 현재 요건을 다소 수정하고, 해당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하는 방안
 - 고용 관련한 인증제도를 범부처 간 논의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방안
 - 고용분야 세액공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특별한 경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
 - 고용분야 세액공제의 전체 규모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세액공제를 그 안에서 조정하는 방안
 - 세무조사 방식으로 경정청구 사례의 일부를 임의추출, 조사하여 과대 청구된 기업

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이는 등의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여 부당한 경정청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

- 현행 가산세 제도를 조정하여 정기신고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방식을 더 유도하는 방안

참고문헌

1. 문헌자료

국세청, 「알기 쉬운 고용증대 세액공제」, 2023.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24.

김성태·윤성용,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40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22. 12, pp. 125~143.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오종현·김문정,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유혜인, 「일본 여성활약추진법의 시행 현황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10. p. 347.

윤성만·박진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 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p. 16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용관련 세무행정 설문조사」, 2024.

2. 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본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미국 United States Code, 26 USC 51

미국 SSA, Social Act

캐나다 Income Tax Act

3. 온라인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

Global Tax Expenditure Database, <https://gted.taxexpenditures.org>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

IRS, <https://www.irs.gov>

Korea Times, <http://la.koreatimes.com>

Red Seal, , <https://www.red-seal.ca>

TASIS, <https://tasis.nts.go.kr>

Tax Note, <https://www.taxnotes.com>

Tax Watch, <https://www.taxwatch.co.kr>

經濟産業省, <https://www.meti.go.jp>

国税庁, <https://www.nta.go.jp>

中小企業庁, <https://www.chusho.meti.go.jp>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

부 록

1. 「고용관련 세무행정 설문조사」 설문지

기업 기본 사항

(SQ1) 귀사의 소재지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2) 귀사의 주된 업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됩니까?

호텔업, 여관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 ① 예 (→ 조사 종료) ② 아니오 (→ SQ3)

(SQ3)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 귀사의 주된 업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대분류 | 중분류 |
|-----|-----|
| | |

※ 대분류 선택 후 해당 대분류 내 중분류 선택하도록 설계

(SQ4) 아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귀사의 기업유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2023년 12월 또는 가장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귀사는 다음 중 어떠한 기업 유형에 속하십니까?

- ① 소기업 ② 중기업 ③ 중견기업 ④ 대기업
⑤ 기타 일반기업(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 포함) 또는 공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 조사 종료)

〈소·중·중견·대기업 기준〉

| 구분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대기업 |
|-----------|---|---|--|--|
| | 소기업 | 중기업 | | |
| 기준 조건 | ①~④ 모두 충족 | | ①~④ 중 1개 이상 충족 단, 중소기업, 대기업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 제외 | ① 또는 ② |
| 규모 기준 | ①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 ① 업종별 평균매출 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하고 중소 기업 규모 기준 이하 |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 ①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 |
| 독립성 기준 |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업종 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 |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 액등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 |
| |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 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 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 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 |

〈참고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참고 1〉의 계속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17. 수도업 | E36 |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9. 광업 | B |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29. 건설업 | F |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
| 35. 부동산업 | L | |
|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6. 가구 제조업 | C32 |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8. 광업 | B |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22. 수도업 | E36 | |
| 23. 건설업 | F |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참고 2〉의 계속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 33. 정보통신업 | J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 42. 부동산업 | L | |
| 43. 임대업 | N76 |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SQ5) 귀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십니까? (근로자 기준)

- ① 예 ② 아니오

〈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 | |
|--|------|---------------|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 광업 | B | |
| 건설업 | F | |
| 운수 및 창고업 | H | |
| 정보통신업 | J | 300명 이하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자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도매업 및 소매업 | G |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200명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K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그 밖의 업종 | | 100명 이하 |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

자료 출처: 중견기업 범위해설, 2021년 www.mme.or.kr

(SQ6) 귀사는 사업연도가 존재하니까?

- ① 예 (→ SQ6-1) ② 아니오 (→ SQ7)

(SQ6-1) (SQ6=①번 응답자번 응답자) 귀사의 가장 최근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사업연도 시작일 | | | 사업연도 종료일 | | |
|----------|---|---|----------|---|---|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 SQ6의 ②번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처리

| 사업연도 시작일 | | | 사업연도 종료일 | | |
|----------|----|----|----------|-----|-----|
| 2023년 | 1월 | 1일 | 2023년 | 12월 | 31일 |

(SQ10) 2024년 4월 30일 기준 귀사의 **성별·연령대별 고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정규직 정의:
 다음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기업의 임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정규직 여부 | 성별 | 연령대 | | | |
|--------|----|-----------------------------|--------------------------------------|-------------------------------------|-----------------------------|
| | | 34세 이하 (1989년 5월 이후 출생자) | 35세~44세 (1979년 5월 ~ 1989년 4월 출생자) | 45~54세 (1969년 5월 ~ 1979년 4월 출생자) | 55세 이상 (1969년 4월 이전 출생자) |
| 정규직 | 남성 | 명 | 명 | 명 | 명 |
| | 여성 | 명 | 명 | 명 | 명 |
| 비정규직 | 남성 | 명 | 명 | 명 | 명 |
| | 여성 | 명 | 명 | 명 | 명 |

(SQ11) 2024년 4월 30일 기준 귀사의 **성별·경력기간별 고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정규직 여부 | 성별 | 경력 기간 | | | |
|--------|----|-------|---------------|----------------|--------|
| | | 2년 미만 | 2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정규직 | 남성 | 명 | 명 | 명 | 명 |
| | 여성 | 명 | 명 | 명 | 명 |

(SQ12) 귀사의 평균적인 정규직 채용기간(채용 공고 시점부터 채용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 | | |
|--|--|--|
| | | |
|--|--|--|

개월

(SQ13) 2024년 4월 30일 기준 귀사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 정규직 여부 | 성별 | 연령대 | |
|--------|----|--------------------------------|--------------------------------|
| | | 34세 이하 (1989년 5월 이후 출생자) | 35세 이상 (1989년 4월 이전 출생자) |
| 정규직 | 남성 | 명 | 명 |
| | 여성 | 명 | 명 |
| 비정규직 | 남성 | 명 | 명 |
| | 여성 | 명 | 명 |

(SQ14) 2024년 4월 30일 기준 귀사의 **만 9~12세 또는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 정규직 여부 | 성별 | 연령대 | |
|--------|----|--------|--------|
| | | 34세 이하 | 35세 이상 |
| 정규직 | 남성 | 명 | 명 |
| | 여성 | 명 | 명 |
| 비정규직 | 남성 | 명 | 명 |
| | 여성 | 명 | 명 |

(SQ15) (응답자 특성) 응답하시는 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 부서 | 직위 | 현 직장 근무 기간 | 전체 경력 |
|----|----|------------|-------|
| | | 년 | 년 |

|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수준 | | | | |
|---------------------------|--------|------|--------|-------|
| 매우 낮다 | 낮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높은 편이다 | 매우 높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SQ16) 정부지원 기업대상 세제지원 제도에 대하여 귀사에서 신청할 때 실제 업무 수행자는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기업의 대표
- ②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
- ③ 인사팀/경영전략 등 관련 부서의 일반 직원
- ④ 기타()

경력단절 여성 관련 제도 (E)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

(E1) 2023년(1월 1일 ~ 12월 31일)에 귀사는 경력단절 여성을 몇 명이나 채용하셨습니다가?

| | | |
|--|--|--|
| | | |
|--|--|--|

명

(E2) 앞 문항에서 응답한 2023년에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 중 경력단절 직전 동종업종(000)에 종사하였던 경력단절 여성은 몇 명입니까?

| | | |
|--|--|--|
| | | |
|--|--|--|

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동종업종으로 000에 (SQ3)의 중분류 응답 반영

(E3) 귀사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채용하려고 노력한다.
- ②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을 더 우대 또는 차별하지 않는다.
- ③ 인력 관리 상 경력단절 여성보다는 청년 등 다른 계층의 채용을 더 선호한다.

(E4) 귀사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세제혜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세제혜택

- 동종업종에서 종사하던 경력단절 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년 대비 고용이 증가하였을 경우 고용증가 인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년간 세액공제함

| 기업 구분 | |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
|-------|-------|------------------|
| 중소기업 | 수도권 밖 | 1,550만원 |
| | 수도권 안 | 1,450만원 |
| 중견기업 | | 800만원 |
| 일반기업 | | 400만원 |

- 고용증가 인원은 매월 말일 기준 월평균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인원임. 예를 들어, 전년도와 비교해 고용에 다른 변화는 없고 경력단절 여성을 1월에 채용하여 그해 12월까지 1년간 고용을 유지했다면, 고용증가 인원은 1명이며, 동일한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6월에 채용하여 12월까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했다면 고용은 0.5명 증가한 것임.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대략 안다 ④ 매우 잘 안다

(E5) 귀사는 2023년에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 중 경력단절 직전 동종업종에 종사하였던 경력단절 여성을 000명 채용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들 중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제혜택을 고려해 고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 ① 예 (→ E5-1) ② 아니오 (→ E5-2)

(E5-1) (E5=①번 응답자) 그렇다면 이들 중 경력단절 여성 세제혜택을 고려해 고용한 경력단절 여성은 몇 명입니까? (→ E6)

| | |
|--|---|
| | 명 |
|--|---|

※ (E2)의 응답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E5-2) (E5=②번 응답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로 더 고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력단절 여성보다 청년 등 다른 근로자 계층 채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② 세제혜택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③ 채용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 요건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④ 채용의사 결정 시 세제혜택을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F2) 현 사업체에서 앞서 제시된 세액공제 제도 중 **최근 5년간** 세금 신고 시 적용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제도가 있으십니까?

| 지원 제도 | 최근 5년간 세액공제 제도 적용 여부 | |
|------------------------|----------------------|-----|
| | 예 | 아니오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① | ②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① | ②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① | ② |
| 고용유지증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 ②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① | ② |
| 통합고용세액공제 | ① | ② |

(F3) 다음의 설명을 보고 응답해주십시오.

* 다음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임금이 증가한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대상 | <p>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④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⑤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금액 제외)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친족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제외) · 단시간 근로자 </div> |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내용 | <p>① 원칙: ㉔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p> </div> <p>② 특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2%)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0.032)}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p> </div> |

(F3-1) 다음은 앞서 세액공제 내용에서 제시된 용어입니다.
 각 용어에 대한 명확성 수준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매우 명확하면 5, 전혀 명확하지 않으면 1)

| | 용어의 명확성 | | | | |
|---------------------|------------------|---|---|---|------------|
| | 전혀 명확하지 않다 | | | | 매우 명확하다 |
| ㉠ 평균임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상시근로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F3-2) 이제 귀사에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신청하고자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신청할 때, 각 용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할 때 얼마나 용이한 지를 예상하고 답변해주시시오.
 (증빙작업이 가장 용이한 경우 5, 증빙작업이 가장 어려운 경우 1)

| | 실제 증빙작업의 용이성 | | | | |
|--|--------------|---|---|---|---------|
| | 전혀 용이하지 않다 | | | | 매우 용이하다 |
| ㉠ 평균임금 (☞ 기업의 주어진 임금 자료를 통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가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상시근로자 (☞ 일년간 고용한 근로자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가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기업의 주어진 임금 자료에 기반하여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가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F3-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매우 그렇다 5, 전혀 그렇지 않다1)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신청요건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 지원 내용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세액공제 |

| | 응답자의 의견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매우 그렇다 |
| ① 기업들이 본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리고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② (자격증 미소지 일반) 기업 실무자가 해당 세액공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③ 기업이 해당 세액공제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④ '상시근로자' 보다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기업의 고용규모를 판별하는 것이 행정 편의상 더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⑤ 지급명세서에서 제출된 신고항목에 기반하는 등, '평균임금'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⑥ 세액공제의 제도의 내용과 증빙서류가 간단해진다면, 기업들이 본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리고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F4) 다음의 설명을 보고 응답해주시시오.

*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복귀자 등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휴직복귀자와 관련된 정의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 여성 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의미함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가 아닐 것 |
| 육아휴직 복귀자 | 육아휴직복귀자 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함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가 아닐 것 |

(F4-1) 귀사에서 '경력단절 여성'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각 요건 확인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 | 확인의 용이성 수준 응답자의 의견 | | | | |
|--|-----------------------|---|---|---|----------|
| | 매우 어렵다 | | | | 매우 쉽다 |
|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가 아닐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F4-2) 귀사에서 '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각 요건 확인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 | 확인의 용이성 수준 응답자의 의견 | | | | |
|--|-----------------------|---|---|---|----------|
| | 매우 어렵다 | | | | 매우 쉽다 |
|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가 아닐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은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취득의 경로와 의문점 해소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F5) 귀사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취득하십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 ② 회계사·세무사 혹은 관련 협회
- ③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④ 기업마당 Biz Info
- ⑤ 중소기업24
- ⑥ 중소기업지원센터
- ⑦ 중소기업 중앙회
- ⑧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⑨ 중견기업 정보마당
- ⑩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 ⑪ 대한상공회의소
- ⑫ 기타()

(F6) 귀사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와 관련한 의문점이 존재할 때 어떠한 기관으로 부터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 ② 회계사·세무사 혹은 관련 협회
- ③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④ 기업마당 Biz Info
- ⑤ 중소기업24
- ⑥ 중소기업지원센터
- ⑦ 중소기업 중앙회
- ⑧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⑨ 중견기업 정보마당
- ⑩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 ⑪ 대한상공회의소
- ⑫ 기타()

세정연구 24-07

**고용분야 조세 지원제도의
세무행정상 쟁점과 개선방향**

발 행 2024년 12월 31일
저 자 김문정·정효림·박하얀
발 행 인 이 영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쇄 인
I S B N 979-11-6655-338-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세정연구 24-07

고용분야 조세 지원제도의 세무행정상 쟁점과 개선방향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9 791160 553622
ISBN 979-11-6655-362-2